

第249回國會  
(臨時會)

# 環境勞動委員會會議錄

第 2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4年8月25日(水)

場 所 環境勞動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가. 노동부소관
2.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노동부소관
3. 2003회계연도기금결산  
가. 노동부소관

### 審査된案件

- |                            |   |
|----------------------------|---|
|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    | 1 |
| 가. 노동부소관                   |   |
| 2.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 1 |
| 가. 노동부소관                   |   |
| 3. 2003회계연도기금결산 .....      | 1 |
| 가. 노동부소관                   |   |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경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이정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경재 수고하셨습니다.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가. 노동부소관
2.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노동부소관
3. 2003회계연도기금결산  
가. 노동부소관

(10시10분)

○위원장 이경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노동부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2항

노동부 소관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  
사일정 제3항 노동부 소관 2003회계연도기금결  
산,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  
개, 그리고 이상 3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  
님, 그리고 환노위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9회 임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03  
회계연도 노동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사용  
명세, 그리고 고용보험기금 등 5개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경제적으로 내수가 급속히 위축되는  
가운데 이라크전쟁, 사스 등 대외적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전반적인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든 어려  
운 여건이었습니다. 노동시장에 있어서도 청년실  
업 문제와 함께 비정규직 취약계층 등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저희 노동부는 한편으로는 청년실업 대책 등 고용 안정에 주력하면서 근로계층 간 격차 완화와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해 노동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총 101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49%인 5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6398억 원, 전년도 이월금 432억 원, 예비비 9억 원 등 총 6749억 원이었으며 이 중 92%인 6229억 원을 지출하고 430억 원은 이월, 91억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는 9억 원을 배정 받아 공무원 봉급조정 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기금은 고용보험기금 8조 3440억 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5조 88억 원, 임금채권보장기금 4181억 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2913억 원, 근로자복지진흥기금 1조 8395억 원 등 총 15조 9017억 원을 조달 운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과 기금의 집행을 통하여 첫째, 청소년 고령자 장기실업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을 중점 추진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면서 고용안정센터 개편을 통해 수요자 밀착형 고용안정 서비스 체계 구축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을 저하와 인구의 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장애인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둘째, 직업훈련 시설 등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노사관계 개혁 방향을 마련하여 우리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관행 개혁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노사갈등 현안에 대해서는 대화와 타협, 법과 원칙을 통한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면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과 합리적 노사관행 형성을 위한 지원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촉진하고 클린사업 내실화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개선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 제도 개선을 마무리한 바 있으며 고용·산재보험 적

용을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확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노동시장에는 청년실업 문제,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또한 노사제도와 의식, 관행을 개혁하여 노사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이루는 일도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노동부가 이러한 국가적인 과제들을 잘 해결하여 우리 노동시장의 안정과 노사관계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해서 나온 상임위원을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신홍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김원배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다음은 저희 노동부 주요 간부, 그리고 산하단체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길상 차관입니다.

정병석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최병훈 고용정책실장입니다.

노민기 노사정책국장입니다.

엄현택 근로기준국장입니다.

이채필 산업안전국장입니다.

양승주 고용평등국장입니다.

이기권 공보관입니다.

진운기 감사관입니다.

정철균 국제협력관입니다.

신영철 고용정책심의관입니다.

이상석 노동보험심의관입니다.

백종면 능력개발심의관입니다.

다음으로 산하단체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방용석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입니다.

이동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입니다.

김용달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입니다.

박은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입니다.

안종근 한국노동교육원장입니다.

문형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입니다.

이만호 산재의료관리원 이사장입니다.

박용웅 학교법인기능대학 이사장입니다.

(간부 및 산하기관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정병석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노동부 소관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 및 예비비 사용명세를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부기획관리실장 정병석**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노동부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예산 결산, 기금 결산, 국유재산 및 국가채권 현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 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총 101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49.1%인 5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91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54.1%인 49억 원을 수납하였고 예특회계는 10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3.2%인 31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을 보면 작년도 예산현액은 6749억 원입니다. 이는, 이 중 92.3%인 6229억 원을 지출했고 430억 원은 금년도로 이월되었고 1.3%인 91억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 집행 현황은 아래 표에 상세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징수 현황입니다.

세부 사항은 3페이지에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세입 징수 결정액은 전년 대비 30억 원이 감소한 91억 원입니다.

이 중 지자체 고용촉진훈련 보조금 환수 32억 원, 근로자 복지매장 보조금 환수 19억 원 등 기타 경상이전 수입 75억 원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과태료 수입은 14억 원, 이자 수입·토지매각대·기타 잡수입은 2억 원입니다.

징수 결정액 중 49억 원은 수납하였으며 그 내역은 기타 경상이전 수입 40억 원, 과태료 수입 8억 원, 이자 수입·토지매각대·기타 잡수입 1억 원입니다.

수납률은 54.1%로서 2002년도 대비 9.3%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이것은 징수 결정액이 감소한 가운데 과년도 미수납액을 다시 징수 결정함에 따라 다소 저조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불납 결손액은 과태료 수입 8400만 원이고 그 사유는 과태료 이의신청에 따라서 법원으로 이관된 것이 7700만 원 등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41억 원입니다. 이는, 그 주요 내역은

근로자 복지매장 보조금 환수액, 또 그 이자 20억 원, 근로 청소년 임대아파트 보조금 환수액 11억 원, 노동 관계법 위반 과태료 6억 원 등입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근로자 복지매장 보조금 환수액과 그 이자 20억 원 중 11억 원은 금년 4월에 수납하였고 지자체 고용촉진훈련 보조금 환수액 2억 5500만 원은 지난 1월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예산 집행 현황은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당초예산 5963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 343억 원, 예비비 9억 원이 증액되어 총 6315억 원이었고 이 중 91.8%인 5794억 원이 지출되고 6.8%인 430억 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고 1.4%인 91억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지출액 5794억 원의 주요 내역을 보면 취업 지원 등 고용안정사업에 1615억 원, 직업훈련 지원 등 능력개발사업에 2128억 원, 그리고 청사관리 인건비 등 기관 운영에 130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3년도에서 2004년으로 이월된 430억 원의 내역은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지원금 195억 원, 취업훈련 지원금 151억 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46억 원 등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10페이지에 상세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불용액 91억 원의 내역은 직업 적응 훈련 등 자활사업 지원금 23억 원, 취업훈련 지원금 19억 원,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지원금 14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용액 내역입니다.

작년도에는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억 원의 전용 대부분을 인건비 부족액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액입니다.

이용액도 인건비 부족으로 13억 8900만 원을 이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는 이월액의 세부 내역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는, 세부 내역은 생략하고 11페이지 불용액 내역도 시간관계상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세입징수 현황은 9억 8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2%인 3100만 원을 수납하고 96.8%인 9억 5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사업주 미수납금은 채납자의 재산부족 등이 주원인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271억 원 중에서 대부분은 지출하고 1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진폐위로금 244억 원, 건강진단비 21억 원 등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세입징수 현황은 해당이 없고,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이농 및 전업 예상 농어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농어민고용촉진훈련의 훈련비와 훈련수당으로 13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경상이전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융자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세입징수 현황은 해당이 없고,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재원으로 150억 원을 전액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 융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3 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부 소관 5개 기금의 조달·운용 규모는 총 15조 9017억 원으로 아래 표와 같이 각 기금별 실적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라는 세부내역을 기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보험기금은 8조 3440억 원을 조달해서 1조 8508억 원을 지출하고 6조 4931억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조달내역은 여유자금 회수한 것이 5조 4779억 원, 고용보험료 2조 5936억 원 등의 내역으로 되어 있고, 운용내역을 보면 실업급여 사업에 1조 1036억 원, 직업능력개발사업에 5801억 원, 고용안정사업에 1127억 원 등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5조 88억 원을 조달해서 2조 9607억 원을 지출하고 2조 480억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조달내역을 보면 산재보험료 2조 4651억 원, 여유자금 회수 2조 2260억 원 등의 내역이고, 운용내역을 보면 보험급여 지급에 2조 4818억 원, 근로복지공단 출연에 1894억 원, 산업안전공단 출연에 1462억 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금채권보장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4181억 원을 조달해서 1304억 원을 지출하고 2877억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조달내역을 보면 여유자금 회수가 2755억 원, 사업주 부담금이 607억 원 등입니다. 그다음에 운영내역을 보면 해당금 지급에 1220억 원, 여유자금 운용에 287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2913억 원을 조달해서 2171억 원을 지출하고 742억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조달내역을 보면 장애인고용부담금 1039억 원, 기타 여유자금 회수 1270억 원 등이 되었고 운용내역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에 1116억 원, 여유자금 운용 742억 원, 장애인고용사업자 융자금 346억 원, 한국장애인촉진공단 운영 등에 70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근로자복지진흥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1조 8395억 원을 조달해서 1조 3339억 원을 지출하고 5056억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조달내역은 여유자금 회수 1조 4242억 원, 창업자금 융자금 회수 2043억 원, 복권 등 자체수입 17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운용내역은 차입원리금상환에 1조 1926억 원, 체불근로자 생계비용자 등 중소기업 등에 933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에 있습니다라는 상세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및 국가채권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작년도에 259억 원이 증가했고 84억 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174억 원이 순증하였습니다. 재산총액은 2002년말보다 5.4% 증가한 3378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산별 세부증감 내역은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채권은 2003년도에 38억 원이 증가하고 57억 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2년말 대비해서 보면 28.3% 감소한 48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증감내역은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3년도 주요사업별 집행실적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03 회계연도 노동부 소관 예비비 사용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2003년도 예비비로 9억 2900만 원을 배정받아 가지고 98.9%인 9억 1900만 원을 지출했고 1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사용이 없었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예비비로 집행된 9억 1900만 원은 전액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이월 및 불용내역입니다.

이월된 금액은 없었고 불용내역은 정원 미달 운영 등에 따른 집행잔액 1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 회계연도 결산 관련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목희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예, 말씀하세요.

○**이목희 위원** 여기에 나오신 분 중에서 세입세 출결산과 별관계가 없는 분은 돌아가셔도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중앙노동위원장이 계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우원식 위원** 그리고 산하기관장이 꼭 필요한가요? 대개 노동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부 담당국장이 대답하면 되거든요. 노동부장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방금 우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동부 담당국에서 충분히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그러면 예산 결산 답변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관련이 적으신 분은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관** 2003년도 노동부 소관 세입세 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노동부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89억 7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0억 8600만 원으로 이 중 49.1%인 49억 5300만 원을 수납하고 50.9%인 50억 4900만 원을 미수납하였으며 8400만 원을 불납결손처리하였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미수납액 40억 9600만 원은 근로자복지매장 보조금 반납금,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보조금 반납금 등으로 미수납률이 2001년도 10.9%, 2002년도 35.3%, 2003년도 45%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징수율 제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3년도 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6749억 3900만 원으로 이 중 92.3%인 6228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집행은 2002년도 집행률 90.7%에 비하여 다소 개선된 편

입니다. 이월액은 429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342억 5600만 원에 비해 87억 2600만 원이나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집행률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91.8%,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는 전액 집행되었으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99.9%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의 주요사업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사협력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은 노동부가 노동교육원에 위탁한 신규사업으로서 당초 예산액이 20억 원이었으나 홍보비 등 운영경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여 1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동 사업이 2003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전용 등의 방법으로 증액하여야 함에도 이월액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의 2003년도 조정성립률이 50.4%로 전년도 44.1%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초심판정 결과에 불복한 재심신청률이 58.5%로서 전년도 48.6%에 비하여 다소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위원회의 조정 및 심판결과가 노사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시스템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안정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사업의 2003년도 예산액은 642억 9300만 원으로 인턴취업지원제 1만 3100명, 연수지원제 3만 5000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액은 인턴취업지원제는 계획 대비 50.7%인 6637명, 연수지원제는 계획 대비 184.1%인 6만 4443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이는 계획과 맞지 않는 집행으로 보이는 바 계획수립 시에 전년도 실적이나 사업량을 충분히 분석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사업지원 분야를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전체의 54.9%에 편중된 면이 있고 사업지원 내용 면에 있어서도 독거노인 및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중풍·치매노인 간병사업,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등과 같이 사업의 소관이 불분명하고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사업과의 구별도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사업 성격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고 다른 부처의 사업과 중복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자활직업훈련은 목표인원 2500명보다 19.1%가

많은 2979명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였으나 취업률이 11.4%로 다른 사업에 비해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활취업촉진사업은 예산액 34억 5400만 원으로 이중 47.6%인 16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직업적응훈련의 경우 예산액 33억 3700만 원 중 57.5%를 집행하였는데 이와 같은 자활직업훈련사업이 부진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체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직업능력개발사업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7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2003년도에는 목표인원의 90.9%를 훈련시키는 등 양적인 훈련성과는 개선되고 있으나 취업률이 낮고 지자체별 취업률도 최고 71.6%에서 최저 28%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취업률 제고 방안과 사업실적에 의한 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능대학의 시설확충사업을 보면 사천 항공기능대학의 활주로 설치공사는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사업실시가 불투명하고 대구섬유패션기능대학의 이전 신축사업은 대구시의 어패럴밸리단지조성사업 지연으로 2006년도에나 사업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예산집행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고 학과실습이나 교과의 진행이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보호 및 복지증진사업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운영예산을 보면 근로감독업무지도비 중 2억 6000만 원이 전용 또는 불용되었는데 산업안전감독관의 경우 결원율이 18.8%, 고용평등감독관 결원율은 20.5%나 되어 근로감독관 결원으로 인한 업무부담의 과중 등 문제점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므로 감독관의 충원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사업의 예산액은 33억 2300만 원으로 이 중 29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훈련인원 2823명 중 1729명이 훈련을 수료하였으며 수료자 중 31%가 취업하여 사업의 효과성은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취업률 제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예방사업입니다.

클린사업장조성지원사업은 작업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실시하고 있으나 사망재해율은 1.24%, 사망만인율은 3.15%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재해율 감소방안과 클린사업장조성지원사업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보다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과 지원조건 등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03년도 진폐근로자보호사업 예산으로 27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진폐위로금 등 135억 3700만 원을 다음연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등 매년 예산이 부족하여 진폐위로금 지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바 예산추계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부 소관 5개 기금의 2003년도 총 운용규모는 15조 9016억 6900만 원이며 계획 대비 155.6%가 증가하였습니다. 계획보다 실적이 크게 증가한 원인은 고용보험기금의 여유자금 5조 3061억 6300만 원이 당초 계획에서 누락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기금입니다.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은 예산액 150억 원 중 1%를 집행하였고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예산액 193억 7300만 원 중 31.4%, 직장보육시설설치비용지원사업은 예산액 26억 7500만 원 중 41.9%를 집행하는 등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등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실업자 재취직훈련비용대부사업, 교정훈련시설지원사업, 직업훈련법인시설 및 장비지원사업은 사업실적이 없으므로 사업의 존치여부의 판단, 사업요건 및 추진체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의 경우 1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사업장 84만 5910개 중 98.9%인 83만 6201개인데도 지원비율은 14.3%로서 150인 이상 기업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원비중이 낮으므로 직업훈련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구직급여는 집행률이 98.2%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연장급여는 예산액 73억 7800만 원 중 2.4%가 집행되었으며 진찰비 지원 예산은 1000만 원 중 6.6%만 집행되어 실적이 극히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003년도 4454명이며 부

정수금액은 17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 부정수급 액보다 적은 수준이나 부정수급 환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59.3%로서 2002년도 73.7%, 2001년도 87%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부정수급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성보호사업의 경우 산전후휴가 급여 예산액 500억 원 및 육아휴직 급여 예산액 270억 원의 집행률은 각각 67%과 39.2%로 전년도 집행률 18.3%와 8.6%에 비하여 실적이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집행실적이 낮으므로 지원수준을 현실화하는 등 활용률 제고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입니다.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사업의 당초 예산액 1340억 2800만 원 중 626억 9900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46.8%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등 2001년도부터 동 사업의 집행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임금채권보장기금입니다.

2003년도 해당금 부정수급액이 139명에 3억 5200만 원으로 2001년도 4600만 원과 2002년도 7000만 원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업체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고 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장려금지출액이 급증함에 따라 기금의 수지가 악화되고 있으므로 기금사업의 재평가를 실시하여 기금악화요인을 제거하는 등 안정된 기금운용을 위한 보다 장기적이고 정확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복지진흥기금입니다.

신용보증지원사업의 경우 2003년도 대위변제금 집행액은 60억 78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112.3%의 실적을 보여 대위변제금이 전년도 3700만 원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2003년도 구상금 회수액은 1억 9900만 원에 불과하여 대위변제금 채원마련과 구상금 회수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요약하여 보고드립니다. 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국회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배일도 위원 발언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노동부 보고를 듣는 중에 인사소개가 있었는데 주요간부 프로필에 특히 노동부 프로필에 학력을 기재해서 프로필을 제시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력을 보고 사람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채용규정에 학력이 철폐되어 가는 마당인데 프로필까지 그것을 기재하고 특히나 사시·행시, 직업에 귀천이 없는데 행시한 것이 큰 자랑이 되는 것처럼 그것만 명시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 의제와 관련된 발언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렸고, 아까 여기 출석했던 대다수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이것은 의사진행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의사일정을 정함에 있어서는 간사 간에 협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위원님의 제안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돌아가는 것은 절차상에 대단한 하자를 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출석인원을 사전에 명시해서 정해야 왔다가 돌아가시는 불편함이 없고 과연 어느 분이 관련이 있는지 돌아가신 분 중에 우리가 물어야 될 내용이 있는지도 아주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범하지 않으려면 이후에 출석대상자를 지명해서 출석할 수 있도록 간사 간에 사전협의를 거쳐 주실 것을 의사진행상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재 여기 출석하는 인원은 예산을 집행한 기관과 거기에 관련자들은 일단 다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위원 개개인이 누구누구에게 어떤 질의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각자 위원들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별로 질의할 분이 없으면 구태여 여기 앉아 계시 필요 없다는 측면에서 절차상 그러한 제기와 함께 여러분들의 의사를 물어가지고 돌아가시도록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일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의사일정을 상정함에 있어서 간사 간에 협의를 안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이경재** 이것은 의사일정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의사일정은 이미 결정이 되었고요.

○**배일도 위원** 의사일정이라 하면 그 속에서 의사를 정하는 절차와 내용, 형식, 범위까지를 총괄해서 얘기하는 것이 의사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한테 지금 현재 이런 자리에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셨다가 어느 분은 가시고 어느 분은 남아 계세요. 누가 이것을 판단하십니까?

○**위원장 이경재** 그러니까 질의하실 분들만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셔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의할 것이 있는가를 여쭙았고 여기에 대해서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특별하게 질의할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확인해 보고나서 돌아가시도록 한 것이고, 앞으로 특별히, 이것은 특별한 문제가 아니고 평상시에 해 오는 문제이고 구태여 이 사람은 필요하고 이분은 필요없다 하는 부분이 꼭 결정될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여야 간사 협의에 의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두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언 위원** 2003년도 결산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장님께서서는 이번부터는 결산을 실질적으로 좀 운영하자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의례적으로 결산심사를 했는데 한번 제대로 해서 결산이 통과 의례가 되지 않도록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러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들을 한번 열심히 들여다봤어요. 아마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환노위 위원 모든 분들이 다 같은 문제를 검토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이들테면 수간지원금이라든가 사회적일자리창출 관련 사업,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관련사업, 유급휴가훈련지원금사업, 고용유지지원금사업들의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이월액이 많다거나 불용액이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들에 대한 검토를 해 보면 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경

제가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자가 늘고 하다 보니까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노동부가 고심해서 만든 사업들인데 제 느낌은 이 사업들이 결국은 땀땀사업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어렵고 힘들게 진행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 국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제상황이 호전되어서 투자가 늘어나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정도이지 경제상황은 그대로 놔두고 투자는 늘지 않는데 노동부가 어떻게 해서든지 일자리 늘려보겠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절실히 보여 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예산 전체 차원에서 보면 이 예산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투입되고 집행이 되는 사례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들여서 차라리 경제활성화에 힘을 쓰고 그러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노동부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업들을 하는데 돈을 투입하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율적인 사업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차원에서 지난 국회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정부가 접근을 하는 것이 맞지, 노동부 차원에서 이것을 이런 저런 사업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하다보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이상이 있겠지요. 이것이 집행 실적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간지원금사업을 보면, 장관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잘 안 되지요. 그래서 2001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잘 안 되니까 2003년도부터는 지원분야를 막 확대합니다. 그래서 사업자금도 좀 줄여보고 합니다. 그래도 계속 안 되지요. 그러다가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도 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산도 3배 넘게 증가를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예산 대비 15%, 계획인원 대비 24%라는 실적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장관님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우선 정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고용안정사업과 관련하여 우선 무엇보다도 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이어서 또 강조를 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하지만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경기적인 요인과 구조적인 요인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당히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과정 중에는 그러면 경제 활성화만 바라보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정부로서는 이런저런 고용안정사업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실제 고용안정사업 전체에 있어서 사실은 정확하게 이에 대한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체로 예산을 편성할 적에 실제 집행에 있어서 부족한 경우가 있으면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다 편성되었다는 점은 인정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실적이 낮은데,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한 기간이,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을 하면서 대체로 한 10년 정도 그러한 사업의 성과를 가지고 추세를 분석해서 예산 편성에서 보다 현실에 근접해 가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 노동부에서도 아직까지 역사는 일천하지만 보다 현실 수요에 근접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예측하는 데 더욱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지적해 주신 수강지원금사업이 부진한 것은, 처음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을 주로 사업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들의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우선 수강할 만큼 시간을 자유로이 자기가 사용할 수가 없고 또 워낙 사정이 그러하다 보니까 기업의 사정상 새로운 수강에 대한 인센티브가 거의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와서 대상을 50인 미만으로부터 300인 이상으로까지 확대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지금까지 있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00인 사업장으로 대상도 좀 넓히고 또 연령제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두언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알고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더 사업을 확대하면서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두언 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없다 보니까 사업 대상을 자꾸 늘리는데 그러다 보면 자기모순에 빠지지요.

그러니까 워낙 중견기업은 자체 교육 프로그램

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에 그 기능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그것을 늘리다 보니까 결국은 중견기업들은 사람을 보내게 되고 오히려 본래 취지에 맞는 영세기업들은 바쁘고 또 인력이 없고 그러니까 못 보내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러니까 실적을 높이다 보니까 그 사업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적이 나쁘는데 계속 예산을 늘린 것입니다. 2003년도에는 3배나 늘리고 또 2002년도도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2004년도에도 예산을 크게 늘리지는 않았지만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정말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재검토와 보완이 없이 그냥 사업 대상 폭만 늘려가면서 간다는 것이 저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예산집행이 계획 대비 딱 이루어질 수 있게, 거의 근접할 수 있게 사업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안정사업 전반에 관해서 그러한 방향에서 재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사업들이 도입된 지 몇 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현재의 시점에서 아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다소 힘든 면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수요 예측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사업 검토를 위한 용역 및 연구·검토 시작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두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심의 때 그에 대한 자신 있는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을 검토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저희들도 자신 있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의 경우에도 동종의 사업이 한 10년 정도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근접한 결과들이 나와서, 아직까지는 이것이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정 위원님이 요구하는 수준에 딱 맞추기는 좀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두언 위원 그러니까 다시 같은 얘기인데요, 사업 대상을 늘리는 방법만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것은 물론입니다.

○정두언 위원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사업도 비슷한데요. 이것은 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계획 대비 인원은 계속 늘어나는데도 실제로 집행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알다시피 사람을 통해서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기관을 통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계속 이것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까?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것도 사실은 앞서 질의하시고 제가 답변드린 것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현실 수요 예측을 통해서 예산의 편성에서 실적과 근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두언 위원 그러니까 장관님은 계속 노력한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오는 것이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진국의 경우에도 고용안정사업이 도입 초기에는 이렇게 예산 대비 실적이 상당히 괴리가 많이 생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정두언 위원 선진국의 사례를 저한테 한번 보내 주세요. 선진국을 어느 나라를 말하는 것이지 또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렇게만 밀고 나가기에는……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두언 위원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이런 사업이 한두 가지 사업이면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주 많은 사업들이 다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말입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업을 도입했을 적에 그에 대한 수요 예측이라는 것이 실제로 신청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처음에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이 하나 있고요. 또 처음에는 사업 예산을 운용할 적에 전반적으로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경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이 처음에는 엄격하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상당히 실적이 낮은 상태로 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개선되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저희

들이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두언 위원 그리고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이지요. '99년 정부 지원 인턴제가 일종의 공공근로사업이고 차라리 돈으로 주고 말지 뭐하러 쓸데없이 이런 것을 하느냐,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세련된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취업지원제라든가 연수지원제로 나왔던 모양인데요. 실제로 거의 공공근로와 별 차이가 없이 운영된다는 것은 감사원 지적사항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르바이트지 뭐냐……

본래 취지는 사전에 일터에 대한 기회를 가져가지고 자기 진로를 정해 보자는 것인데 실제로는 취업이 안 되니까 6개월 하다 또 쉬다가 다시 신청하고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저는 둘 다 문제가 있지만 연수지원제는 그만하고 차라리 연수지원제 예산을 취업지원제로 묶어서 취업지원제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연수지원제도 다시 한번 평가를, 물론 자체 평가도 하고 국무조정실 평가도 하겠습니다마는 이 돈을 여기에다 쓰느니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문제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차라리 기존의 사업에 다시 돌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이것도 역시 앞서 말씀하고 전부 연결되는데요. 전반적으로 고용안정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겠다고 이미 지난 국무회의에서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대한 그러한 조정과 재검토를 통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두언 위원 나머지 문제는 보충질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정두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주 위원 김형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일반회계와 3개 특별회계 그리고 5개 기금을 통해서 노동부에 주어진 예산을 나름대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장관님 또 중앙과 지방의 노동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텐데 우선 일반회계 세입 예산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굉장히

히 크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대한 수치의 예측이 쉽지는 않겠습니다. 예산 배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징수결정액이 2001년 2002년 2003년 계속 많아지는데 예산액 대비 결정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정해 놓고도 수납하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거든요.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노동부장관 김대환**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바로 그러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최소한 이런 갭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제도상으로 회계연도가 있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징수 사이에 있어서는 시간대가 회계연도하고 딱 일치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하반기에 된 것은 그다음 해에 가서 징수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여튼 국가예산을 쓰는 저희들로서는 이런 갭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주 위원** 사안별로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나타나는 수치가 가장 높은데 물론 영세기업에 어쩔 수 없이 부과를 시켜도 제대로 납부하기 어려운 처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수치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노동자, 근로자들의 산업안전에 위협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데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바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이 문제는 최근에 산업안전보건법이 바뀌었습니다. 작년 7월부터 바뀐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기존에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벌을 했는데 작년 7월부터 과태료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과태료 사항으로 되어 있고 또 개정된 법을 시행하면서 작년 연말에 대대적으로 검찰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해서 적발이 되는 대로 과태료를 많이 부과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작년에 특히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김형주 위원** 다음은 예산변경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보고를 보니까 예비비를 전체적으로 인건비와 관련해서 썼는데 적절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 같은 것은 미리 충분히 예측해서 예비비 전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라든지 다른 민생 관련 예산으로부터 인건비 관련 예산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경직성 비용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를 나중에 예비비로 충당하는 것은 예산을 잘 운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가 인원과 인건비 관련한 것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경직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내지는 결원 등과 관련해서 중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그렇게 충당했구요.

또 특히 저희 노동부는 여러 가지 위원회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 같은 것이, 대충 추정합니다. 애초에 아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 하는 그런 요인들이 노동부 내에 있기는 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실적과 계획 사이의 갭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주 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업상담원의 인건비 불용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업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또 고용시장 자체도 불안정한 상태에서 직업상담원이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처지가 못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재 예산상의 정원보다 86명이나 모자라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수요에 비해서 2001년도 이후에 전혀 증원을 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잘 아시다시피 직업상담원은 지난 IMF 위기와 관련해서 그때는 상당히 많이 채용되었습니다. 이후에 실업률이 그 당시와 비교해서 낮아졌기 때문에 기획예산처나 인원 예산을 관리하는 쪽에서 증원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데도 잘 안 되고 오히려 저희들은 직업상담원이 하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이 수행해야 될 고용보험업무 이런 것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결원이 생기는 대로 공무원으로라도 충원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데 역시 예산하고 인원 따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형주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외국인 고용

허가제와 관련해서 현장에 가 보면 직업상담원들의 실제 노동은 강도가 세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렇습니다. 새로운 업무가 자꾸 추가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원증원이 자동적으로 연계되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상당히 경직되어서 노동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인원증원을 신청해 놓고 관련 부처와 열심히 협의하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주 위원** 저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보험기금 관련해서 여쭙어 보겠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6년간 운용한 실적을 바탕으로 보면 대체로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적정하게 기금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예컨대 직업능력개발사업 혹은 고용안정사업 같은 경우 준비율 배수가 1.5배라든지 1.0배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기금의 규모가 지나치게 많이 걷히고 있지 않느냐, 운용에 있어서 과다적립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역으로 본다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렇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기금의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를 위해서 9월부터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초기에 기금을 운용할 적에는 보수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는 시기적인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느 정도 기금이 적립되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과다적립이라고 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실제 사업수요와 관련해서 적립 수준을 어느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보험료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9월부터 정밀분석을 하겠습니다.

○**김형주 위원** 더불어서 일용직이라든지 자발적 이직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적용해 왔기 때문에 임시직 근로자나 일용직,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지금까지 대단히 보수적으로 운용해 온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

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또 일부는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형주 위원** 끝으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핵심적으로 보면 보고서에 의해서도 보면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운영 등에 관련해서 709억이라는 돈이 쓰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부담금 중에서도 고용장려금 지급액이 1116억 원이라든지 다른 직접적인 경비에 비해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운영경비가 지나치게 방만하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물론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복지 증진은 중차대한 과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자체의 경영이 방만하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더 많은 돈이 갈 수 있도록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사장님은 가셨습니다마는 그런 데에 대한 말씀 해 주시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상으로 보면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운영경비가 689억 원으로 잡혀 있는데 실제로 내역을 보면 실제 장애인공단 운영은 240억 정도이고 나머지 450억 정도가 실제로는 장애인고용 알선 등등 사업에 지출되는 경비입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공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특히 실제 사업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김형주 위원** 더 효율을 기해 주시고 또 고용관련된 문제는 고용안정센터와 여러 가지 중복을 피해서 체계적으로, 조금 더 효율성을 높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김형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열린우리당의 조정식 위원입니다.

아마 올해 하반기 일선현장에서 가장 바쁘고 가장 노고가 많으실 곳이 노동부가 아닌가 싶고 그런 면에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어제 환경부에 대한 결산심사 질의를 했는데 환경부하고 노동부를 비교해 보니까 종합적으로 그런 감이 들어요. 환경부는 실제로 돈이 없

어서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 같은 경우 매년 지적이 되는 것이지만 집행이 안 되는 불용액이 항상 많습니다. 다시 기금으로 과다 적립되기도 하고…… 그래서 갖다 쓰라고 해도 안 쓰니까 노동부로서도 고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각 사업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서 거기에서, 예컨대 정말 꼭 필요하고 지원해야 될 곳에는 전폭적으로 늘려 준다든가 그리고 불필요한 사업이거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통폐합하든가 줄이든가 하는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그런 데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검토하고 계시다고 그랬지요? 언제쯤 나오나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9월부터 착수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조정식 위원** 상반기 중에 1차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이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도 이번에 결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앞서 다른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노동부 예산 운용의 기본적인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산업현장에 문제점이 많아서 저 자신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해서 저도 일단의 책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9월에 용역이 진행되면서 실제 사업과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연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 몇 가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이 있지요? 현황을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인턴취업지원제하고 연수지원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인턴취업지원제가 2003년까지는 1인당 50만 원이었다가 올해부터 10만 원 인상되었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 위원** 60만 원으로 된 것이 맞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조정식 위원** 그다음에 대상인원, 계획인원과 관계해서 봤을 때 1만 3000명에서 내년도에 1만 명으로 줄었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양해하신다면 담당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 일단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 현황과 관계된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인턴취업지원제와 관련해서는 대상인원이 1만 3000명에서 1만 명으로 줄었지요?

○**노동부고용정책심의관 신영철** 예.

○**조정식 위원** 그다음에 연수지원제는 3만 5000명에서 6만 명으로 늘었지요?

○**노동부고용정책심의관 신영철**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 위원** 이에 대해서 지난번에 감사원 재무감사가 있었지요?

○**노동부고용정책심의관 신영철**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 위원** 장관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8월 14일 감사원 재무감사결과를 알고 계신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정식 위원** 거기에 보면 연수지원제에 대해서 특히 지적이 많았고 사업의 대폭 축소나 전면 중단이라는 지적이 있었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조정식 위원** 그런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취업지원제와 연수지원제 양쪽으로 하고 있는데 역시 같은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시를 하고 신청을 했을 적에 적합여부를 따지고 한편으로 예측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더불어 상당히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운영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지적한 그런 근본적인 차원에 대해서 실제 사업의 효율화와 내실화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같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담당국장님께서 확인을 받은 것은 연수지원제는 내년 계획에서는 3만 5000명에서 6만 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취업지원제는 좀 부진하고 연수지원제 쪽으로는 상당히 많은 수요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수요에 맞추어서 내년에는 연수지원제도 더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식 위원**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과는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감사원에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 혹은 폐지 여부까지 검토하라고 했는데 물론 더 근원적으로 검토를 해야겠지만 대체적인 저희들의 판단은 취업지원제에서는 수요가 실제로 별로 없고 연수지원제 쪽에 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보다 양자 간에 비중을 조정해서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에 대한 존폐 여부는 이 사업이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몇 년쯤 운영해 가면서 우리가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식 위원** 현재 연수지원제를 통해서 실제 취업할 수 있는 취업률이 얼마나 됩니까? 한 1% 정도로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저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 위원** 물론 이것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되었고 여기에 대한 감사원 재무감사 지적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의 장단점과 문제점을 동시에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추경에서 보면 청년실업 해소 대책으로 인턴지원제 예산을 100억 원 신청해서 배정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맞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추경 신청했을 때 40억 원입니다.

○**조정식 위원** 100억 원 아닌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추경으로 받은 것은 40억 원이고 합쳐서 100억 원입니다.

○**조정식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인턴취업지원제 용으로 배정받은 금액인데 이것이 그 용도로 안 쓰여졌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고용정책심의관계 답변 좀 미루겠습니다.

○**노동부고용정책심의관 신영철** 취업지원제로 추경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취업지원사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연수지원제 사업으로 돌려서 집행을 했습니다.

○**조정식 위원** 그러니까 전용된 것 아닙니까?

○**노동부고용정책심의관 신영철** 그 내역이 변경된 것입니다.

○**조정식 위원** 그런 점에서 보면 현재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과 관계해서 봤을 때 인턴취업지원제 같은 경우가 안고 있는 문제 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청년실업 해소차원에서 이것을 추경까

지 편성해서 했는데도 또 그 내용이 변경이 되고 감사원에서는 연수지원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적이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가지 동시에 얽혀 있다고 보거든요.

또 그런 속에서 내년 2005년도에 대상인원을 줄인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대폭 증가하고, 물론 인턴취업지원제를 활성화시키려고 기존의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10만 원 올리기는 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좀더 효율적으로 제대로 실효성 있게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지적하신 점 유의해 가지고 제도개선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만 지금 예산상으로는 취업지원이나 연수지원이 한 항목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보다 이 사업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옮기는 것은 불법적인 전용은 아닙니다.

그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지속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전반적인 노동시장에서 봤을 때 우리 청년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하나의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기업에서 신규근로자들을 채용하지 않고 경력직을 자꾸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70% 이상을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졸업생이 아니라 뭔가 경력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지금 현재 노동시장이 수요상황이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는 작업으로서 이런 직장체험 프로그램은 필요하겠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그런데 실제 시행해 보니까 수요와 집행 사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내에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사업을 제대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몇 년이 지나가면서 전체적인 추이를 봐가면서 감사원에서 지적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검토를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조정식 위원** 아무튼 2005년 내년 예산편성 계획으로 보면 특히 연수지원제 관계해서는, 물론 이것은 당연히 수요가 늘게 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직접 거기에 오는 학생들이나 청년들한테 돈을 지급해 주니까 본인들도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청년실업 해소라든가 또는 가급적 민간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권장 유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 비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로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것인데 실제 내년도 노동부 계획으로 보면 3만 5000명을 6만 명으로 늘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 자체로 본다면 배

치되는 것이 아니냐 지적한 것이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감사원의 지적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단기적으로는 노동시장에 그런 속성이 있고 또 수요가 지금 현재 굉장히 늘고 있고 실제 이 프로그램을 체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 보니까 이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용했다는 설문평가가 나와서 저희들은 이것을 축소하기 보다는 활성화시키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조정식 위원** 그렇게 본다면 그것을 양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용 쪽으로 연수지원제 사업이 실제로 연수하는 학생들에게 진로선택에 도움도 되고 추후 민간기업 위주로 가급적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감사원의 첫 번째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현실로 보면 대개 민간이 아닌 동사무소나 이런 데 와서 복사하고 심부름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공공부문 쪽에……

(이경재 위원장, 이목희 간사와 사회교대)

○**조정식 위원** 그래서 그것을 민간기업 위주로 운영될 수 있는 보다 질적인 내용강화라든가 대안들이 같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표준연습프로그램 매뉴얼도 제작해서 배포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민간 쪽에서는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조금 문제가 있으면 요새 젊은 연수생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자꾸 그런 의견들을 하니깐 민간에서 좀 부담을 가지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민간 쪽에 저희들이 매뉴얼도 배포하고 설득도 하고 해 가지고 민간부문에서 이 프로그램을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외에도 지적하신 대로 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 다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산재예방시설자금 용자사업이 2000년도까지 98% 집행률을 보이다가 뚝뚝 떨어져서 지금 50% 미만이지요? 사업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거든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조정식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낮은 원인이 뭐

냐 하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하고 용자금리하고 차이가 워낙 좁혀져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기업에서 갖다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와 관계된 비슷한 노동부의 사업을 보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이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왜냐 하면 무상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무상의 경우도 있고 무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식 위원** 그런데 지금 산재예방시설자금 용자사업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이유가 결국 금리 문제가 주원인이라고 봅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추가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금리는 최근에 3%로 인하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목희**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길 위원** 열린우리당의 제종길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재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산재가 사실 줄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사업장의 확대라든지 고용의 질 저하에 따라서 산재가 계속 줄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또 하나 저희가 산재보험기금에 대한 활용에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1년 이후에 각년도 산재보험기금 결산서를 살펴보면 산재보험급여 지출액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제종길 위원** 2001년에는 1조 4563억 원에서 2002년에는 2조 203억 원, 2003년에는 2조 4000억 원이 넘는데 이러한 급속한 증가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대체로 이런 증가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종길 위원** 그 이유는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우선 산재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자꾸 늘려가고 있고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기존의 산재 환자들이 자꾸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지출규모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종길 위원** 뿐만 아니라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연금수급자도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있고

또 장기간 급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도 실제로 장애급여라든지 유족급여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계속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사업주에게 계속 보험요율을 높여서 부담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장관님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이것도 굉장히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지금까지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지급상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장기요양을 하는 경우 요양의 적정성 문제를 가지고 여태까지는 대체로 굉장히 요양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했는데 적정성 판단을 엄격하게 하고 특히 최근에 와서 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관련성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해서 기금 지출에 있어서 효율화에 좀 단기적으로 집중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종길 위원** 그런데 저희가 산재라고 하면 사회가 발전하면 산재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되는데 지금 장관님 말씀을 듣다보면 산재판정이 굉장히 엄격해져 가지고 오히려 과거에는 산재를 받아야 될 대상이 산재를 받지 못하거나 충분한 요양을 못할 우려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른 대책을, 예를 들면 보험요율 산정하는 방식을 좀더 개선해 가지고 기업주에게도 크게 부담주지 않으면서 산재대상은 줄이지 않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기금운용에 관해서 그런 것이 좀더 필요하고 요율조정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프로젝션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제가 효율화 말씀을 드려서 혹시 실제로 받아야 할 산재요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염려하시는데 그런 데까지는 아니고 좀 엄격하게 해서 사실상 도덕적 해이 문제가 일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제종길 위원** 하여튼 산재기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가 산재를 잘 관리하고도 충분히 보상하거나 아우를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면밀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제종길 위원**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고용촉진이라든지 실업대책에 대한 부진과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업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가장 부진한 것을 살펴보니 여성고용촉진 문제가 제일 부진하더라고요. 2002년도에 보니까 집행률이 5.7% 밖에 안 되고 2003년도는 예산액을 대폭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31.4%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처우가 점점 향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고용안정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사실은 여성고용촉진이 제일 부진한 사업은 아닙니다. 수치적으로 그렇긴 한데 상당히 부진한 사업 중에 여성고용촉진사업도 속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고용평등국장이 대답하겠습니다.

○**노동부고용평등국장 양승주** 고용평등국장입니다.

여성고용촉진장려금 부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육아휴직장려금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주에게 육아휴직장려금을 월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은 워낙 사용률이 낮은 문제로 인해서……

○**제종길 위원** 20만 원씩 주는데도 왜 낮지요?

○**노동부고용평등국장 양승주** 사용주가 육아휴직 활용을 기피하는 관계로 실제 육아휴직을 원하는 여성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종길 위원**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사용주는 20만 원을 차라리 안 받더라도 육아휴직 안 보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고용평등국장 양승주** 예, 그렇습니다.

○**제종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의 육아휴직은 매우 중요하고 최근에는 배우자까지도 육아휴직을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노동부에서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 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목희 간사, 이경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단순히 돈만 많이 늘리지 않고 예를 들면 여성의 육아휴직의 사회적인 필요성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많이 출산해야 되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대한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고, 제가



보기에는 장려금 20만 원도 적다고 봐지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노동부고용평등국장 양승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장려금은 20만 원이지만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15만 원, 1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종길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에도 지금 말씀하시는 국장님의 표현에서 느껴지는데 그것이 효과가 없을 것이다…… 사실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육아휴직을 안 보내는 것이 재정적으로 훨씬 이익이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홍보와 함께 사업주들이 실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예를 들면 2002년에 719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금액이 충분히 쓰일 정도로 한번 높여보고 난 후 활용이 과다하다 싶으면 그때 가서 좀 줄여 가더라도 실지로 현실성에 맞지 않는 대책으로 집행률이 5.7%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비과학적이고 예측이 안 되어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수립해서 여성과 육아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동부고용평등국장 양승주** 예, 알겠습니다.

○**제종길 위원** 그런데 이것이 만약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 저희 국회에서도 육아휴직에 대한 대책은 필요 없는 대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노동부고용평등국장 양승주** 알겠습니다.

○**제종길 위원** 아까 조정식 위원께서도 질의를 잠시 하시고 또 다른 분도 하셨는데 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 대해서 다시 여쭙 보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도 내년도에 가면 전체적으로 적자가 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면 기금까지 다 없어지겠는데 장관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제종길 위원** 그런데 일반회계 전입금 500억하고 재특용자금, 복권기금이라고 해서 500억을 신청해 놓으셨는데 이것 받으실 자신 있으세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제 위원님께서 열심히 도와 주시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종길 위원** 그런데 없었던 예산이 너무 갑자기 커져 가지고 이것이 합쳐져서 1000억인데 지금

올해 예산만으로도 61억의 적자가 나고 2000억이 넘던 적립기금이 지금 234억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안 되면……

○**노동부장관 김대환** 안 주시면 이 기금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전반적인 기금 운용 관리체제 등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종길 위원** 물론 정부의 예산으로 계속 충당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되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 계속 일반회계 전입금이 늘어나야 될 상황이거든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솔직하게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장애인고용기금은 구조적으로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장애인 고용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고용기금을 내는 쪽, 기금의 수입은 자꾸 줄어들게 되어 있고 고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출은 자꾸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 문제는 구조적으로 장애인 고용이라는 목적이 달성되면 될수록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 자체 내에서 재검토를 통한 접근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국가 경제 사회 전체적으로 장애인 고용 문제를 정부의 예산으로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상당히 큰 문제를 같이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종길 위원** 그런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받아서 장려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제종길 위원** 그런데 부담금을 내야 하는 기업들은 사회적으로 건설하고 잘 알려진 일류기업 아닙니까? 그런 기업들이 부담금을 더 내야 되는데, 제가 장애인고용부담금 상위 50개 사를 보니까 1위를 한 어느 기업 업체 명을 대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인데 고용률이 0.19%에 불과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기업들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기업들이 장애인을 효과적으로 고용하면 장려금을 안 줘도 되는 기업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장애인을 의도적으로, 제가 보기에 이런 퍼센티지라면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조금 더 늘리는 방안……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것까지 포함해서, 특히 지

적하신 우수한 모 기업의 경우에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장애인 고용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하고도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모로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일반회계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금의 속성이 장애인 고용이 늘어나면 기금의 수입은 자꾸 줄어들게 되어 있고 장애인 고용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지출은 자꾸 늘게 되어 있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이 기금 자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종길 위원**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만 장애인 고용률이 떨어지는 좋은 회사들에 대한 부담금, 물론 그런 법 개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실효성 있게 적용되는 것은 2006년, 2008년인데 좀더 당겨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당장 올해 예산으로 1000억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실 텐데 우리 환노위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장애인 고용 촉진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바로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대처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률에 따라 부담금을 가중시키는 문제,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대책으로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제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德模 委員**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도 있고 하니까 간략히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오늘 보고에서 나타난 문제점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기금 결산 할 때 보니까 노동부 소관 5개 기금의 운용 규모가 15조 9000억인데 원래 계획은 10조 2000억이었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난 것은 고용보험의 여유자금 5조 3000억을 애당초 누락시켰다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전체적으로 8조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3조만 계상하고 5조를 빼먹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도록 계수 자체를 전혀 몰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 부분은 작년에 예산회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지 실제적으로

은폐한 것은 아닙니다. 보험심의관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동부노동보험심의관 이상석** 노동보험심의관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5조 3000억 원이 여유자금이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여유자금 부분은 당해연도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총계주의에 위배된다, 여유자금도 기금운용계획에 같이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금운용계획에는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기금운용계획은 시간이 도과되어 가지고 저희가 시간을 놓친 문제는 있습니다.

○**李德模 委員** 그러면 지침이 바뀐 것도 아니고, 지침을 몰라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노동부노동보험심의관 이상석** 그리고 이 부분은 작년에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여유자금 부분은……

○**李德模 委員** 바뀐 부분을 애초에 모르고……

○**노동부노동보험심의관 이상석** 국회 의결을 받지 않고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李德模 委員** 처음부터 법규에 맞게 했다면 뒤에 가서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바뀐 법규를 모르고 그렇게 한 것이지요?

○**노동부노동보험심의관 이상석** 여유자금의 경우에는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2003년 이전에는 관례에 따라서 그것을 반영하지 않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德模 委員** 그러면 끝까지 반영하지 않으면 되는데 회계연도 중간에 그것을 반영한다는 것은, 사실 그 사이에 지침이 변경된 것도 아니고 원래 있는 지침을 숙지하지 못한 문제가 있겠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아닙니다.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노동부노동보험심의관 이상석** 그래서 2003년 말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이 지적되어 가지고 2004년도에는 반영을 시켰습니다마는, 2003년도 결산부분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못 했고, 그리고 이번에 이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李德模 委員** 그런데 그것을 이번 결산 보고에 갑자기 포함시켜 놓으니까 좀 말이 안 되네요.

○**노동부노동보험심의관 이상석** 예산결산특별위

원회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에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德模 委員** 그다음에 역시 고용보험기금 문제인데 감사원 지적 자료를 보니까 2001년도 3월에 노동부 예규를 국공립대학의 기성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이 아니더라고 판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2003년 6월에 감사원이 감사할 때까지 49개 국공립대학에 대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고용보험료를 과다 수납하여 6억 4000만 원을 더 거뒀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침에 대한 숙지를 하지 못한 결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노동부노동보험심의관 이상석** 이 부분도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데 저희가 예규를 개정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예규를 시달하여 공단 지사 일선에서 제대로 일을 하도록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과 협의를 충분히 하고 사후 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德模 委員** 어쨌든 3년씩 차질이 생겼는데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감사원 자료를 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직원, 사업주, 심지어는 사망자까지 약 2만 880명을 짧게는 2년 6개월, 길게는 8년 8개월 동안 피보험자로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보험자 자격이 있는 8만 8325명은 오히려 3년 넘게 누락시켰다는 것이거든요. 이 정도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노동보험심의관 이상석** 이 부분도 감사원에서 피보험자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3년에 걸쳐서 국민연금 자료,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 자료를 같이 전산 대사를 하여 밝혀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사실 피보험자로 직접 관리되지 않더라도 피고용자로 고용된 사실만 확인되면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지급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李德模 委員** 그런데 실제로 사망자라든지 이런 사람은 장기간이 지나면 대상이 아닌 것을 알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비롯하여 심지어는 국공립 교육기관의 직원이라든가 개인 사

업자까지 다 집어넣은 것은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것도 길게 8년까지 갔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업무가 상당히 산만하다고 봐 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부노동보험심의관 이상석** 저희 고용보험 관리 측면을 말씀드리면 피보험자의 자격 신고나 탈퇴 신고는 사업주가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는 사후에 전산 대사를 한다든지 해서 가입과 탈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사후 감독 하고 있는데 최근 저희가 여러 가지 전산기법도 도입하고 전산체제도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또 국세청 이렇게 각 기관의 전산자료를 쉽게 대사할 수 있는 체제가 됐습니다.

○**李德模 委員** 이것은 최근이 아니고 무려 한 5~6년 전부터 전산 대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된 8만 명이라든가, 몇만 명의 누락이 나타난 것은 해당 부분의 담당자가 업무에 나태했다고밖에 안 보입니다. 실제로 전산자료를 대사한 것은 오래 전부터지요.

○**노동부노동보험심의관 이상석**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사립학교 교직원 관련 전산 데이터하고 공무원 연금관계 전산 데이터입니다.

종전에는 전산 자료 자체를 고용보험 쪽에서 확보하기가 곤란했던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하면서 최근의 관련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면서 대사를 한 번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대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누락이랄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전산 자료를 충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德模 委員** 어쨌든 그 부분은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관계안정지원사업 중에 노사협력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사협력지원사업에서 지난해에 한국노총에다가 20억 4000만 원을 지원했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李德模 委員** 그런데 그 중에 64.8%가 인건비하고 경상비로 지출되고 사업비로는 35.2%만 쓰였거든요. 한국노총이 자체적으로 자활 능력이 없는 기관입니까? 왜 인건비를 대줍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 부분은 인건비가 아니고 대체로 교육, 상담, 국제교류, 정책 개발 쪽에 저희

들이 지원을 한 것입니다.

○李德模 委員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노동단체 지원경비 집행 내역을 보면 인건비에 10억 4000만 원, 경상비에 2억 8000만 원이 쓰였고 사업비라고 가져가 가지고 실제로 사업비로 쓴 것은 7억 10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돈을 가지고 가서 그 사업에 필요했는지 필요하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인건비로 썼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주로 교육, 상담, 교류 이런 쪽으로 예산이 집행되니까 그 부분은 상당 부분 인건비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자체가 인건비,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되다 보니까 실제 회계 처리에 있어서는 인건비 부분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한 60%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사업 자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비나 한국노총에 지원될 인건비로 지원한 것은 아니고 교육이나 상담 등등에 필요한 인건비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德模 委員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자료를 따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알겠습니다.

○李德模 委員 그다음에 신노사문화창출사업으로 작년에 28억 9000만 원을 책정해 가지고 28억 75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실제로 노사분규는 상당히 늘어났지 않습니까? 작년에 노사분규로 제조업 부문의 생산 차질이나 수출 차질액이 얼마인지 대충 아시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사실 추계 방법상 여러 가지 논란은 있는데 생산 차질은 한 2조 5000억 정도로 추계하고 있고 수출은 한 10억 5000만 달러 정도 차질이 있었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李德模 委員 그렇다면 30억 원 가까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오히려 결과가 더 나빠졌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글썄요, 30억을 투입해서 결과가 더 나빠진 것이 아니고 반대로 30억,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더 많이 발생될 수 있었던 손실을 사전에 예방한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德模 委員 연년이 노사분규가 확대되고 생산 차질이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십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지금까지 나타난 현상이 그렇다는 데 대해서는 부인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유의 깊게 봐 주시면 이러한 생산 및 수출 차질을 발생시키는 노사분규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동부로서는 노사관계 안정을 통해 최대한 경제 사회적인 손실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李德模 委員 사실은 이와 같은 경비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한국노총에만 일방적으로 지원하니까 민주노총이 제외돼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주노총도 사실상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임대료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 것이고, 또 예산지원에 대한 문호는 공히 균등하게 다 열어 놓았습니다. 열어 놓았는데 민주노총이 지금까지는 국가 예산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내부의 이견이 상당히 있어서 적극적으로 국가 예산을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노사 협력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등등에는 민주노총의 지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민주노총이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분규를 일으킨다든지 하는 해석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李德模 委員 다음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까 조정식 위원이 한 것입니다마는 빠진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 취업지원제에 편성된 예산이 218억 원인데 그 중에 46억 원을 빼 가지고 연수지원에 주었지요?

거기에서 다시 또 100억 원을 추경으로 받아 가지고 146억 원을 연수지원으로 주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연수지원 쪽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李德模 委員 그래서 원래 218억 원 예산이 되어 있었던 취업지원제는 실제로는 170억 원 정도만 썼고 나머지 대부분이 연수지원제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연수지원제의 경우 중도 탈락률이 한 반쯤 되지요? 끝까지 안 한다 말입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중도 탈락률이 꽤 있습니다.

○李德模 委員 거기다가 그것의 취업률이 0.3%거든요. 감사원 지적대로 과연 이것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속성과 또 실제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의 변동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체계적으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李德模 委員** 그래도 납득이 안 가는데 나중에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이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심 위원** 장복심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신 장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노동부의 200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집행률이 91.8%로 2001년 88.7%, 2002년 90%보다 점차 높아지고 있고 불용의 경우도 2003년 1.4%로서 2001년 5%, 2002년 4.5%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산현액 대비 다음연도 이월액 비율은 6.8%로서 2001년 6.3%, 2002년 5.5%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공무원 가족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계시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장복심 위원** 지난 1999년 4월부터 2004년 3월까지 5년 동안 소속 공무원 48명에게 사망하였거나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서 지급대상이 아닌 부양가족 56명에 대한 가족수당으로 1718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몇 분들이 요건을 정확히 알지 못했거나 가족

변동사항을 제때 신고를 안 해 가지고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이 있어서 사후에 인지를 하고 전액 환수조치를 하고 교육과 더불어서 주의를 주었습니다.

○**장복심 위원**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국민 세금이 이렇게 잘못 사용되는 것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 서비스 사용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001년부터 2004년 2월까지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 서비스 사용료 89억여 원을 납부했는데 지로로 납부하는 것보다 자동계좌이체 방식을 이용하면 1%의 할인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관계 공무원이 그 사실을 모르고 지적 이후에 곧바로 시정했습니다. 금년 4월분부터는 자동이체로 바뀌어서 하고 있습니다.

○**장복심 위원** 그러셨습니까? 바꾸었다고 하니 다행인데요. 8242만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낭비를 했습니다. 자동계좌이체 방식을 이용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계사고의 위험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장관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연수지원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너무 공공기관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 연수지원제 사업은 47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실적을 보면 2003년 연수생을 활용한 전체 4839개 기관 중에서 공공기관이 85.1%인 4117개 기관이었고 연수 인원을 보더라도 공공기관이 전체 연수 인원 6만 4846명의 89.5%인 5만 8043명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2002년 기관 수 기준 76.7%, 인원 수 기준 83.1%보다 각각 27.5%와 73.7%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이는 지금 연수지원제 사업이 공공기관에 상당히 편중되어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벌이기에는 공공기관이 연수가 쉽고 또 민간 부문이 프로그램

을 선뜻 잘 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 부문에 의한 연수제도가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 부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시행지침을 개정해서 인센티브를 통해 가지고 민간 부문의 사업 참여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복심 위원 다음은 연수 참여 횟수 제한 문제입니다.

연수지원제는 제한된 예산으로 가급적이면 많은 연수생들에게 직장 체험기회를 주기 위하여 만든 제도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장복심 위원 그렇다면 연수생들에게 참여 횟수와 참여 기간을 정해서 직장 체험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연수에 참여했던 연수생이 아르바이트 목적 등으로 다시 연수에 참여하는데 이를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서 연수생이 참여 기간뿐만 아니라 회계연도를 달리해도 가급적이면 다시 참여할 수 없도록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처음에는 연수기간만 연 6개월 한도로 제한해서 시행했더니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서 현재 연수의 참여 횟수도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년도 시행지침 개정을 통해서 우선 연 1회로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적용하겠습니다.

○장복심 위원 다음은 근로자 수강지원금제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수강지원금제도는 거의 매년 배정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0세 이상,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장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과정도 일반직무과정, 외국어과정, 정보화 기초과정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도 작년과 같은 수준의 예산 및 인원을 배정받으셨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장복심 위원 금년에도 280억 원의 예산 그리고 총 12만 2400명을 대상으로 근로자 수강지원금제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까지 예산상으로는 22억 5200만 원, 대상자로는 1만 5836명만이 이

제도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150억 원을 자체 전용했습니다. 왜 이렇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이 사업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 기대한 만큼 활용이 되지 못해서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집행실적 그리고 향후 소요액을 고려해서 예산 부족이 예상되는 것이 실업자 재취직훈련사업으로 예산이 오히려 부족하고 근로자 수강지원금사업은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150억 원을 변경해서, 전용했다기보다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복심 위원 이와 같은 추세로 가면 금년의 경우도 작년과 비슷한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문제는 노동부가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수처에 급급해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또한 적극적인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대상자인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노동부장관 김대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도입하면서 계획과 실제 집행 사이에 괴리가 있었고 초기 이 사업이 도입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대상도 확대하고 있고 일용직이라든지 단시간 근로자라든지 사업주가 훈련을 시켜 주기에는 별 유인이 없는 근로자들까지 대상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직접 수강을 받는 경우에만 지원했는데 인터넷이라든지 이러닝(E-Learning)쪽으로도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서 이 제도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보다 활성화시켜서 실적이 저조한 것을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복심 위원 지난번에 저희 당에서 마포 고용안정센터를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민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관님께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시간이 조금이라도 허락하시면 한 시간 정도라도 상담자로서 왜 이 나라의 능력을 갖고 일하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충분히 갈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도 방황하고 있는지 현장체험을 해 보

시면 훨씬 더 일을 하실 때 감을 절실히 느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용보험기금 중에서 고용안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용안정사업으로 실시된 사업은 2003년 기준으로 고용유지지원금 그리고 전직지원장려금, 재고용장려금 등 총 12개를 실시하고 있는데 2003년의 경우는 총 2101억 400만 원 중에서 1127억 600만 원, 53.6%의 집행률을 보여서 46.4%인 973억 98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지난 2001년, 2002년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고용안정사업 집행이 실업률이나 경기변동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집행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것은 사업에 대한 정확한 예측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운영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사업과 여성고용촉진장려금사업,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사업은 집행실적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매우 저조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사업은 2003년에는 1만 794명을 대상으로 총 388억6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이 2003년에 전혀 지출이 안 된 것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처음에는 2002년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2003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시간을 보내다가 2003년 하반기가 되어서야 이 법안이 통과되었고 그리고 시행령 등등을 준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003년부터 사업이 시작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만 잡아놓고 전혀 시행되지 않고 전액 이월을 시켰습니다.

○**장복심 위원** 그렇다면 당초 법 개정이야 어찌 되었든 간에 불투명한 상태에서 법적인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 바람직하지 못했다고 생각되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싶지만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사업 등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장복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 우원식 위원입니다.

2003년도 노동부 활동을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2003년도의 노동통계를 가지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대개 전달이 되어 있어서 답변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월 노동통계 조사보고서라는 보고서가 있는데요. 근로시간이 월평균으로 나와 있고 근로기준법 상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이 기준이 되지요? 주당 근로시간을 월로 계산할 때 월당 4.2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굉장히 테크니컬한 문제인데 주당 근로시간을 월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우원식 위원** 제가 근로기준국에다가 물어봤더니 4.2주로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닌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실제로는 4.34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원식 위원**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엄현택** 근로기준국장입니다.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4.34주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365일 나누기 7일하고 나누기 12개월 해야 됩니다. 그러면 4.34가 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러면 첫 번째 질의는 해결되었네요. 4.2주로 계산한다고 이야기를 듣고서 통계를 보니까 4.34로 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를 물어보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어쨌든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월평균 근로시간 198.2시간을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2378.4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2378.4시간을 주당 평균노동시간인 45.6시간으로 나누면 우리나라 근로자는 52.157주를 노동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연평균 52.142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노동자는 쉬는 주가 거의 없는 것이 되는데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가장 긴 노동시간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딴니까? 그리스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래도 2000시간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리스도 2000시간 미만인데 44.6주를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적게 일하는 스웨덴은 35.4주를 일합니다. 51.1주와 44.6주,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나라와의 차이인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우리가 아직까지 장시간 노동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그래서 정부로서도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식 위원**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노동자들만의 책임인 것처럼 자꾸 부각되어지는 것이 실제 수치통계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노동자들만의 문제로 자꾸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구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늘상 강조를 하고 특히 경제부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식 위원** 노동통계조사가 월단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월단위로 분석을 하면 근로기준법상 정상근로시간인 주 44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정상근로시간은 저는 월 4.2주라고 얘기를 들어서 4.2주로 계산을 했는데 4.3~4주로 해도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보면 185시간, 190시간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2003년 통계를 보면 전 산업 기준으로 초과근로시간을 뺀 정상근로시간만으로 볼 때 평균이 188.1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거의 전 산업에서 근로기준법상 얘기하고 있는 정상근로시간 44시간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엄현택** 근로기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월간 근로시간으로 환산하게 되면 44시간 곱하기 아까 말씀드린 4.3~4주를 하게 되면 191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초과근로를 뺀 근로시간 188시간은 법정근로시간 191시간보다는 다소 낮아서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위원식 위원** 다소 못 미치지요. 저도 이것 계산 제대로 한 것이지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엄현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식 위원** 초과근로시간까지 포함하면 현재 근로기준법상의 주당 56시간 이것을 4.3~4주로 하면 한 240시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240시간 넘어가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게 다 불법노동이고 어떤 데는 300시간이 넘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불법노동행위에 대해서 단속한 적이 있나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엄현택** 장시간근로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실질적으로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주 40시간제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식 위원** 왜 못 하는 것이지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엄현택** 초과근로 문제를 단속하게 되면 근로자에게는 가산임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위원식 위원** 근로감독관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엄현택**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로자 임금이 줄어드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임금이라든가 해고문제라든가 이런 더 중요한 사항들 때문에 손길이 못 미치는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식 위원** 제가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죽 점검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물어보니까 노동부에서 이렇게 많이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 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엄현택** 그렇지 않고요. 저희도 장시간근로가 특히 심한 업종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위원식 위원** 저희가 통화해서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설명을 하고 300시간 넘어가는 곳까지 있으니까 다 검토해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통계를 내는 이유는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평가가 없다는 것이지요.

제가 평가가 없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뺄 생각인데 이 보고서에도 보면 “주요 업무별 성과 및 평가”라는 난이 있습니다. 장관님 94페이지 잠깐 봐주시면 평가인데 평가는 없고 업무실적만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면 보고서가 실제로 평가가 되어서 그다음 해는 고쳐지고 좀더 나아지고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보고는 보고로만 간다는 것이지요.

결산보고서도 평가라고 해 놓고 평가는 안 하고 그냥 보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라는 것이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한 해를 결산하는, 제대로 되



어 나가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열악한 조건에서 노동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그리고 불법노동행위들에 대해서 노동부가 근로감독관을 지난번에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명예근로감독관이라도 빨리 도입을 해서 이런 불법행위가 자행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빨리 갖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손놓고 있는 것을 문제제기하는 것입니다.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엄현택**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진정한 2003년 결산을 위해서 제가 노동부에 요구를 드리면 2003년 기준으로 법정 노동시간 이상 그러니까 주 44시간 정식근로시간 이상인 현황과 초과근로시간을 포함한 총 법정허용근로시간을 초과한 현황을 별도로 정리해서 저한테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항목별로 노동통계를 자료로 요구할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항목별로 저희가 지정해서 드릴 텐데 그것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알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리고 전용문제를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2001년에는 19억 원, 2002년에는 18억 원, 2003년에도 11억 원 등 매년 인건비가 10억 원 이상 전용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전용액 12억 8000만 원 가운데서 인건비 전용이 88.7%를 차지하고 있고 예비비지출 9억 1900만 원은 전액이 다 인건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비비도 인건비, 전용도 인건비, 노동부는 원래 계산할 때 인건비가 부족합니까? 왜 매년 이렇게 인건비로 전용하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이것이 참 문제가 있는데 실제 예산편성할 때 인건비는 통상 정원을 기준으로 결원율 2%를 획일적으로 적용해서 예산을 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결원율이 우리의 경우에는 0.4%로 좁혀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처음 2%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된 인건비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예비비 같은 것을 받아서 전용했는데 예비비를 받을 때 아예 그 목적을 명시해서 그렇게 예비비를 받아서 충당했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리고 그 전용액 가운데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나 자활취업촉진사업비에서 또 전용을 했는데 결국 민생지원사업비에서 인건비로

전용한 꼴이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현상적으로 보면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앞에서 지적하신 이 사업이 굉장히 부진한 쪽입니다. 그래서 연말쯤 가서 아주 부진한 사업에서 부분적으로 그렇게 전용을 했습니다마는……

○**우원식 위원** 민생지원사업이 부진해서는 안 되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우원식 위원** 다음은 기업도시에 관해서 노동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전경련이 추진하는 기업도시 방안을 보면 현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해고 60일 전 통보를 30일로, 대상지역 26개로 제한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을 원칙적으로 자유화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경제특구 혹은 기업도시를 하면서 특별한 조치 가운데 노동 관련을 이쪽에 넣는 것은 저희 노동부로서는 기본적으로 온당치 않으므로 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를 통해서 상당한 경제적인 효과를 얻으려고 한다면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거나 하는 방식 외에도 얼마든지 경제적인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것을 하면서 과거 개발연대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손쉽게 노동권부터 제약해서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발상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원식 위원** 노동권이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을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일거에 다 후퇴시키는 그런 조치에 대해서 저도 반대이고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기업도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의가 들어올 텐데 그런 과정에서 장관님의 분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인고용허가제 관련해서 보험신탁을 보면 최근에 어느 특정한 기업하고만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일 업체하고만 계약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아니면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담당국장님이 어느 분이시지요?

○**노동부고용정책심의관 신영철** 저희가 이 보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금융권까지를 전부 대상으로 해서 설명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초기 상품개발이라든가 관리 영업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참여하기 어렵겠다 그리고 손보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초기비용 때문에 공동으로 같이 참여하는 것은 어렵겠다고 그 쪽에서 얘기를 해서 단일사업자를 선정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제안서를 받아서 부득이 여기에서 단일사업자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원식 위원**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계속 이렇게 하실 것인가요?

○**노동부고용정책심의관 신영철**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보험가입 대상자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국내에 고용허가제도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이 들어오는 숫자가 늘어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이것은 추후에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원식 위원** 이것이 특혜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될 소지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다른 기업에서도 상품을 만들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부고용정책심의관 신영철** 그런데 초기에는 상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니다. 상품을 새로 개발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동안 상품개발을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우원식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노동부고용정책심의관 신영철** 향후에는 외국인이 들어오는 숫자가 늘어나면서 그런 여건을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복수사업자를 선정하는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상임위 전문위원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하고 43쪽에 있는 청소년 직장 체험 프로그램과 관련한 불용액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가 나거든요. 하나는 13억 3800만 원이고 하나는 13억 9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왜 차이가 나지요?

○**전문위원 박용판** 제가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아니, 지금 답변을 해 보세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했으면 내용을 알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박용판** ……

○**우원식 위원** 아마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어제 받아 보니까 26쪽하고 95쪽에 두 개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있습니다. 여기 물건비가 하나는 빠져 있고 하나는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95쪽 하단에 보면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지금 위에다가 따다가 붙였는데 이것은 오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견을 하고 왜 불용액이 세 군데가 다 다르냐 하다 보니까 오타여서 노동부에서는 오늘 오타를 확인하고 다 붙였는데, 이것을 저희가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서 이런 오타는 잡아주고 그리고 불용액이 두 가지가 차이가 나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위원들한테 검토보고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전문위원의 입장인데 여기 노동부에서 잘못된 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차이 나는 불용액에 대해서 그 이유도 설명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렇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부실해서야 어떻게 위원들이 전문위원을 믿고 일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용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2003년도 청년실업 관련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장관님께서 청년실업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경력자 채용을 해서 청년실업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청년실업이 이렇게 심각한데, 2004년 7월 말 청년실업률이 7.6%이고 실업자 수는 38만 6000명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0개 부처에서 청년실업대책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예산을 기준으로 노동부를 포함한 10개 기관의 지난해 청년실업대책사업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산자부, 과기부, 교육부 등 전 부처는 계획 대비 평균 81.9%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기금형태로 실시된 교육훈련을 포함한 노동부의 집행률은 77.4%로 타 부처에 비해 오히려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금액으로 보면 예산 총액 2161억 중 1673억 원이 집행되어 488억 원이 불용되었거나 올해로 이월되었습니다.

노동부는 청년실업문제 해결의 주관부서로서 다

른 부처보다 가장 실적이 높아야 하나 국방부를 제외하고 노동부의 사업집행실적이 가장 저조합니다. 특히 지난해 추경사업인 취업훈련지원,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등 3개 사업의 이월액이 과다합니다.

총 262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집행액은 116억 700만 원으로 추경액 대비 44.2%, 다음연도 이월액은 146억 4000만 원으로 추경액 대비 55.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노동부가 실시하고 있는 청년실업대책사업의 집행이 왜 부진하다고 파악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지적하신 대로 청년실업대책사업이 다른 부처에 비해서 노동부의 집행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경우에는 주로 청년직업훈련사업 쪽에 이것을 많이 했고 직업훈련사업의 특성상 훈련기간이 들쭉날쭉 하지만 6개월까지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실제 집행은 후불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특히 지적해 주신 추경예산을 받아 가지고 집행실적이 저조하다고 하는 것도 실제 추경을 받아서 그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하려면 빨라야 10월 중순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실제로 그동안 6개월 정도의 훈련 프로그램……

**○김영주 위원** 제가 장관님 답변 중간에 하는 이유는 질의 드릴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 답변을 하실 줄 알고 곧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추경 편성이 늦어져서 이월이 불가피하다는 측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난해 추경으로 편성되어 대규모 이월을 보였던 취업훈련지원사업,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사업의 2003년도 본예산의 집행 실적마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훈련지원사업의 경우 추경예산 90억 중 27%인 24억만이 집행되었는데 본예산에서도 300억 예산 중 71%인 213억만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543억 예산 중 69.7%인 379억만 집행되고 164억은 이월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고려한다면 청년실업대책사업의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보자는 식의 안이한 생각을 하는지 걱정이 됩니다. 청년실업대책의 집행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러합니다.

청년실업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여기에 대한 사업을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예산 확보라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로 직업훈련 쪽으로 쓰여 졌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상 지급 방식 등등을 감안한다면 이것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지금 청년실업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여건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주무부처인 노동부에서 기능사 양성 특별훈련 233억 중 195억만 집행이 되었는데, 예를 들면 문화관광부의 전문인력 훈련, 물론 예산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습니다. 100% 예산에 100% 모두 집행되었고 정통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을 위한 기술교육도 100% 예산에 100%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비슷한 유형의 교육훈련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있어서도 노동부가 다른 부처보다 낮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런 지적은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저희 노동부가 실시하는 직업훈련 쪽은 상당히…… IT라든지 이렇게 인기가 있는 쪽은 정보통신부에서 하고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쪽은 노동부가 많이 담당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장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본 위원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 촉진에 대해서 앞에서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농친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29일에 고용장려금 단가를 평균 32.8% 인하했습니다.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김영주 위원** 예전 수준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해도 민간기업에서는,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공공기관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고용장려금을 인하할 경우 점차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을 줄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것하고 장애인 고용 실적률하고는 반드시 비례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고용평등국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고용평등국장 양승주** 고용평등국장입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를 인하한 것은 일단 기금 수지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146억에 머물렀던 장려금 지출이 2003년도에는 1116억으로 대폭 증가해서 부담금 수입을 초과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기금 수지 악화가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인 이상 기업으로부터 부담금을 받습니다. 장려금 지출액 75%가 부담금을 내지 않는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출되고 있고 특히 고용 창출이라고 보기 어려운 복지성 지출로 장려금이 대폭 지출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 창출성 지출로 장려금제도를 보완해야 되고 또 이로 인해 복지성 영역에서 많은 모럴해저드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기업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을 때 민간기업에서 납부하고 있는 부담금을 내고 있지 않지요?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2%의 의무고용비율을 지켜도 이 2%가 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민간에서의 고용률이 1.08%인데 공공기관, 특히 헌법기관에서의 고용률은 1.09%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 공공기관이 지키지 않았을 때 노동부에서는 어떤 제재방안이나 대책 장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아마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통계는 작년 말 통계일 것입니다.

**○김영주 위원** 예, 2003년도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2003년도 말 것인데 그동안 참여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 상당히 많이 역점을 뒀서 2004년 6월 말 현재 정부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노동부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공공부문에서 선두해서 지키도록 독려도 하고 국무회의에서도 독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렇지 않아도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 장애자가 많이 늘었는데 그것을 상향조정 하신다니 다행으로 느껴집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성 경비의 이용 및 전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28쪽에 따르면 2003년도 노동부의 이용 및 전용액 26억 7200만 원 중 94.6%인 25억 2700만 원이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또한 인건비성 경비로 이용·전용된 25억 2700만 원 중 22.3%인 5억 6300만 원이 명예퇴직수당으로 사용되었습니다. 5억 6300만 원이 이·전용에 의해 집행된 금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인건비는 그 성격상 예산 편성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 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인건비에 대한 것은 해마다 예상할 수 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2003년 결산뿐 아니라 2001년, 2002년도도 인건비성 경비의 이·전용액 중 상당액이 명예퇴직수당으로 사용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2001년에는 인건비 이·전용액 34억 중 8억, 2002년에는 20억 중 5억 5000만 원이 명예퇴직수당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체 집행 예산의 대부분을 이용·전용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것은 위원님도 질의 도중에 그런 점을 인정하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대단히 경직적이고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아주 공통적이고 확실히 이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로서도 경직적인 예산 편성제도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명예퇴직 인원이 매년 이 정도로 된다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15명 내외가 되고 있으므로 그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 부분은 그렇게 예측이 가능하고 예측에 의거해서 예산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본 위원이 인건비 전용에 대해서, 특히 명예퇴직금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예산을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해서 가능한 한 인건비의 이용 및 전용을 줄이자는 것이고 그 이유가 인건비 이·전용액 중 상당액이 일반사업비에서 이용되었거나 전용되었기 때문입니

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년간의 인건비 이용 및 전용이 특정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특정 사업에 대해서 이루어진 이유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쯤 가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사업 쪽에서 부족한 인건비를 전용하여 충당을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지난해에는 국민기초생활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15억 2000만 원이 인건비로 이용되거나 전용되었습니다. 우리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서 이것은 중요한 사업인데 여기에서 예산을 인건비로 전용하여 명예퇴직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관님께서도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이 부분은 더욱 더 꼼꼼히 챙겨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산재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과 관련해서 미수금이 줄어들지 않는 것에 대한 심각성은 다른 위원들께서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체납 보험료 징수 부진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도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수많은 대책과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2001년 이후에 미수금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진행했던 미수금 회수 대책은 어떤 것이 있었고 그 실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동부장관 김대환**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담당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노동보험심의관 이상석** 노동보험심의관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수금 회수 대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2001년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채권관리팀을 신설해서 체납 보험료 업무를 전담토록 한 바가 있으며 2002년에는 공단 지사별로 체납총액 상한제를 실시하고 전자납부 방법 등 여러 가지로 납부 방법을 간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일부 공매절차를 위탁해서 했습니다마는,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수금 회수 대책은 산재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아주 중요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제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따가 보충질의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김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일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일도 위원** 연속되는 질의와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결산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과문하기도 하고 또 초선의원이기도 하지만 도대체 이렇게 늦게 결산서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을 묻는다는 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본질적으로 마련되고 난 다음에 어떤 내용이든 질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 장관께서도 금년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장관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업 내용에 대한 집행 결과를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장관님께서도 많은 부분에 대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저는 이 결산보고서가 국회에 도착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낸 이후에 이 자료를 받아 보고 지금 현재 질의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지난 16대 국회에서는 이와 같은 수박 겉핥기식의 결산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회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에 의하면 늦어도 5월 31일까지 정부는 결산에 대한 내용을 국회에 보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는 보내 준 자료를 기초로 해서 전문위원들이 검토를 한 후 문제점을 지적하면 그것을 위원들이 받아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이 결산에 대한 내역을 언제 국회에 제출하셨습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이 부분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일도 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답변할 내용이 아니고요, 저는 장관의 결재를 받고 국회에 이 결산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봅니다. 도착한 것은 8월 19일경입니다. 그래서 불

과 며칠 만에 국회 내에서 전문위원회 의한 검토 보고서가 작성되었는데, 오늘이 25일입니다. 저희가 이 검토보고서를 받은 것은 3~4일 전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려야 되는 실정입니다.

물론 금년에는 개원 국회로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5일에 끝났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결재하신 날짜가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장관의 결재가 있어야 이 결산보고서를 국회에 보내도록 행정업무 편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제가 결재한 날짜는 대중 기억을 합니다. 제가 결재는 거의 5월 말경에 했는데……

○**배일도 위원** 그러면 왜 8월에서야 이 보고서를 보냈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글썄요, 그 과정을 기획관리실장께 답변드리도록 했는데 배 위원께서 답변을 거부하셨기 때문에……

○**배일도 위원** 국회에 보낸 날짜만 말씀해 주세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기획관리실장께서 얘기하겠습니다.

○**노동부기획관리실장 정병석**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저희가……

○**배일도 위원** 날짜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노동부기획관리실장 정병석** 저희는 5월 말 이전에 이미 다 재정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말에 저희가 국회에 와서……

○**배일도 위원** 재정부에 5월 말 이전에 제출했다는 것입니까?

○**노동부기획관리실장 정병석** 그렇습니다.

○**배일도 위원** 그런데 모아서 보내는 재정부가 늦게 보냈구만요?

○**노동부기획관리실장 정병석** 그리고 여기 환노위 전문위원실에도 저희가 이미 4월에 즉 설명을 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배일도 위원** 설명, 협의가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결산보고서를 언제 제출했느냐는 얘기입니다.

○**노동부기획관리실장 정병석** 그것은 제 날짜 이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날짜 이전에 저희는 다 제출을 했고 정부 전체 것을 모아서 오는데 거기서 시간이……

○**배일도 위원** 장관, 차관 다음에 가장 지위가

높은 분이 실장님이시지요?

○**노동부기획관리실장 정병석** 예.

○**배일도 위원** 알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들었습니까?

○**노동부기획관리실장 정병석** 제가 날짜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배일도 위원** 저는 구체적인 날짜를 묻은 것이 아니고 5월이나, 8월이나를 묻는 것입니다.

○**노동부기획관리실장 정병석** 5월에 제출했습니다.

○**배일도 위원** 5월에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까?

○**노동부기획관리실장 정병석** 예, 그렇습니다.

○**배일도 위원** 국회에 제출했습니까?

○**노동부기획관리실장 정병석** 저희는 국회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재정부에 제출하면 재정부에서는 정부 전체 것을 정부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합니다. 저희가 국회에 직접 제출하지 않습니다.

○**배일도 위원** 제가 그것은 아까 물었고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하여간 노동부는 5월 말 이전에 재정부에 보냈다는 것이지요?

○**노동부기획관리실장 정병석** 예.

○**배일도 위원** 저희가 국회에서 이것을 받은 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국회에서 결산보고서를 받은 날짜가 대략 언제입니까?

○**전문위원 박용판** 8월 초에 받았습니다.

○**배일도 위원** 방금 확인한 바와 마찬가지로 누군가 중간에, 재정부가 그랬든 아니면 노동부가 그랬든 아니면 전문위원이 거짓말을 하든 아니면 전체가 사실이든 어쨌든 국회에서 결산보고서를 받은 것은 8월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은 것은 불과 며칠 전이고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린다는 것은 지금 저희가 국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국회의원으로서는 먼저 드려야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전문위원들은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에도 상세히 검토를 해서 이처럼 214쪽짜리의 검토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검토보고서는 노동부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내용을 담았으므로 노동부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이 검토보고서를 오히려 고마운 자료로 생각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서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상당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배일도 위원** 노동부가 5월에 보냈다고 그러시기 때문에 장관께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나 결산을 심사해야 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국민에게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법이 이미 바뀌어서 5월 31일 이전에 보내기로 했으면 지금은 개원국회가 있음을 이미 알고 있는 노동부가 그 날짜에 맞추어서 심도 있는 결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그것에 대해서 조목 조목 묻고 또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법을 다루는 한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지금 사과드립니다.

장관께서는 사과하실 용의가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 이후에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법정 기한 내에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따라서 사과할 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일도 위원** 그러십시오. 사과하지 마십시오. 아주 잘 하셨습니다. 5월 말일까지 보내기로 한 것을 5월 말 이전에 보냈기 때문에 전혀 잘못이 없다 그런 내용이십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를 국회 전문위원이 냈는데 제가 이것을 갖다가 물으려고 해도 그런 시기상의 문제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은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장관께서는 이 검토보고서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검토보고서에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저희 노동부가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일도 위원** 본회의의 승인 절차까지를 저희가 검토해서 본회의에 올려주어야 되거든요. 절차적으로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늦어도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시간상의 문제를 배 위원께서 이렇게 장황하게 제기해 놓으시고 저희한테도 또 시간적인 제약을 주셨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배일도 위원** 늦어도 9월 3일 이전에는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데 소위원회를 거칠 것이거든요. 거쳐서 심도 있는 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시간적인 제약이 상당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마는 배 위원께서 요청하셨으니까 그 기간 내에 노동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일도 위원** 제가 시간관계상 구체적인 항목은 지적하지 않는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지적사항의 전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알겠습니다.

○**배일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 이후에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결산이라 하면, 또 예산이라 해도 마찬가지로 인데, 수치상으로 표현된 그 부서의 사업 내용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산이 잘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려면 그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서 제출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동부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통합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될 텐데, 노동부장관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적사항 해소를 위한 대책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이 검토보고서를 저희들도 오늘 처음 받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검토해서, TF 구성의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는 내용을 검토한 이후에 판단하겠습니다.

○**배일도 위원** 저는 긍정적으로 이 문제를 받아들여서 그렇지 않아도 정부는 상당히 기능주의적 정부조직법상 분장되어 있어서 사실상 노동부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될 내용이 다른 부서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 중복 또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의 어려움 이런 것들은 각 부서들이 다 토로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 때문에 국민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무부서조차 찾지 못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것은 장관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 지적사항은

어느 특정한 부서에 맡기기보다는 전 노동부가 먼저 대책기구를 구성해서 가동하시고, 또 그것을 국무회의 시에 제시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종합적인 대책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그나마 정부 조직법의 개정 이전에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정부 또는 각 부처의 의의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배일도 위원님 말씀을 참고 삼아서 일단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저희들이 면밀히 파악한 다음 거기에 적절한 수준의 대책이 어떤 것인지를 내부에서도 논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부처와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배일도 위원** 세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이후에 보충답변서가 오는 대로 다시 제기키로 하고 시간관계상 우선 한 가지만 묻고 다른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개원국회 상임위원회 때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제가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했고 장관께서는 몇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지난 개원국회 시에 산재의 발생이 대단히 심각하다, 그 중에서도 비정규직의 산재가 상당히 무방비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이것을 해소하는 대책은 추후에 마련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근로감독 부분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서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감독기구에서 갖는 것이 우선 순서 아니겠느냐 했을 때 장관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이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취한 조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말씀 주신 그 내용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산재 취약 부문인 비정규직 쪽에 대한 점검을 검찰하고 합동으로 실시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산재의 취약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근로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배일도 위원** 전년도와 대비해서 그것을 더…… 금년도 지난번 보고 이후 조치가 월별로 얼마나 달라졌는지, 장관님의 의지가 얼마나 담겨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그 실적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일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배일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목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희 위원** 사람들이 잘 모르고 언론도 잘 보도를 안 해 주어 그렇습니다마는 올해 노사분규는 사실은 매우 진정되었습니다. 환노위에서도 노사분규가 많네, 근로손실 일수가 많네 하는데 그것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우선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렵고, 여론이나 국민들이 좀 등을 돌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적어도 정부가 대응 시스템을 정비하고 대응능력을 길러 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한 점에서 올해 노사분규의 진정에 기여한 장관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보이는 노사분규의 진정이 노사관계의 중장기적 안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고용보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기금을 너무 적게 쓰고 또 효율성이 부족하게 쓰고 잘못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짚막짚막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무슨 사업을 하는지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전부 법 또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목희 위원** 이것을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탄력적으로 해야 하는데, 또 아시다시피 시행령이 개정되려면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개정을 요구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 실제 사업의 집행을 가지고, 그런 근거를 가지고 시행령의 변경이나 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목희 위원** 물론 그런 경직성은 압니다마는, 그래도 상황에 맞게, 조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할 때 사업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과 300인 미만 사업장이 아주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말씀하신 대로 양자가 좀 차



이가 나고 특히 300인 미만의 훈련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는 우선 이들 사업장의 경영상태가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근로자들을 훈련시킨다고 생각하기 전에 인력이 빠지고 손실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훈련을 받은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자기가 원래 있던 사업장의 상태가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나은 데로 옮기려는 이직의 경향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저희 노동부에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묶어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훈련 컨소시엄은 지금까지 경과를 봤을 때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목희 위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성보호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이런 것이 모성보호라고 되어 있는데 용어 자체가 좀 낙후된 혹은 몰시대적인 용어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글썬요,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목희 위원** 이것은 모성보호의 측면도 있지만 여성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화시키고 증대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렇기 때문에 모성보호를 통해서 고용안정 및 노동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목희 위원** 그러면 산전후휴가의 주된 목적이 모성보호인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렇지요. 우선 모성보호를 통해서 노동력을 비축하고 건강을 통해서 결국 나중에 생산활동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모성보호라고 한 것 같은데 사회과학적으로 고용의 관점에서만 규정하면 아마 우리나라의 대단히 진보적인 여성운동가들이 오히려 모성이라는 용어를 써달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목희 위원**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네요. 그런데 실제로 산전후휴가를 보면 기업주가 60일분을 대고 고용보험에서 30일분을 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산전후휴가 급여는 5만 명에게 지급해서 당초 예산액의 67%가 집행되었고 육아휴직 급여

는 1만 명이 신청해서 혜택을 받았는데 당초 예산액 대비 39.2%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획된 예산도 집행되지 못하는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장관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의하면 산전후휴가 급여를 2006년부터 정부에서 60일 지원하고 사업주에게는 30일만 부담시킨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고용보험기금이 실제로 많이 쌓여 있습니다. 덜 쓴 이유 중에는 창조적 사업을 잘 준비하지 못한 점도 있고 혹은 현실에 안 맞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저는 차제에 산전후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60일로 확대해서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사실 모성보호를 위한 지원금의 성격이, 이 위원님께서 초두에 용어를 가지고 제기한 데에서도 그런 관점이 드러났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모성 건강을 가장 강조했느냐 하면 아주 엄밀하게 볼 적에 모성보호, 출산에 따른 건강은 사실상 건강보험 쪽이 좀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재정이 워낙 불안정하고 상대적으로 고용보험기금이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쪽에서 지원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차후에 성격에 맞게끔 조정하도록 이야기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건강보험은 재정상태가 그렇게 크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고용보험의 적립금은 늘어나 있기 때문에 자꾸 고용보험에서 대폭 지원하라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 방향은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이목희 위원** 예, 아주 고마우신 말씀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점에 따라서 이것은 모성보호의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도 있고 고용안정의 측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을 얘기할 수 있는데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도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보험을 내는 사람들, 훨씬 더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고용보험하고 다른 것이지요. 예를 들면 건강보험 내는 사람들 중에서 이것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오늘 이 질의를 드리면

서 장관께서 어떻게 답변하실까 궁금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니 좀더 고속도로 검토 하셔서 이 문제에 있어서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긍정적’이라는 것은 수사이고 동사는 ‘검토’입니다.

○**이목희 위원** 우리 영역에서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그것은 한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다음은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어 보겠습니다.

확정급여의 경우에 기업주가 반드시 이것을 외부에 적립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확정급여의 경우에는 전액을 다 사외에 적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는 주무국장께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임현택** 근로기준국장입니다.

퇴직연금의 확정급부형 급여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주가 사외에 100% 적립할 필요는 없고 대통령령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적립금을 사외에 적립하도록 명시할 계획입니다.

○**이목희 위원** 그런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못 받을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임현택** 최종적으로 확정급여의 경우는 사업주가 지급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현행 퇴직금 제도와 마찬가지로 사외에 일정 부분을 적립하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나중에 더 보태서……

○**이목희 위원** 그러니까 회사가 도산하고 기업주가 없어지면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임현택** 최소한 일정 수준 이상의 적립은 사외에 되기 때문에 현행 시스템보다는 그만큼은 더 안전하고 100% 완벽하지는 못한 상황이지요.

○**이목희 위원** 안정성을 높일 방안은 현재로서는 강구된 것이 없습니까?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임현택** 사외에 적립하는 규모를 어느 정도로 가정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금융적인 괴리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도산했을 경우에 모든 재직 근로자에게 100% 퇴직금을 지급할 금액을 사외에 적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합리적인 수준의 적립 규모를 정하는 일이 중요할 것 같습

니다.

○**이목희 위원** 합리성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손해를 보는 것은 중소기업 노동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임현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목희 위원** 불법과건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임현택** 예.

○**이목희 위원** 그런데 지금 정규직 노조가 불법과건 조사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불법과건 조사가 잘 안 될 텐데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임현택** 최근에 일부 진정 사건에 따른 불법과건 조사과정에서 원청노조의 비협조로 조사가 거부당한 사례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곧바로 조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밝혀왔고 조만간 조사가 진전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지난 3월에 조선업종에 이어서 현재 철강·화학 업종에 대한 불법과건 점검을 하고 있고 연말에 전자·전기 업종도 지속적으로 불법과건 조사계획을 갖고 있는데 원청노조 그리고 비정규직 관련 노조 또 회사와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협의해 가면서 원래 정부의 목적을 계획대로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목희 위원** 처음으로 돌아와서 고용보험기금과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과감하게 돈을 쓸 필요가 있다,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창조적 사업, 아까 시행령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그런 것인데 창조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노동부 직원도 해외에 내보내시고 많이 배우게 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도록 함으로써 취업알선, 고용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이 기획되었는데 1%가 집행되는 것도 있고 15%가 집행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현제에 있는 항목 말고 다른 사업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노사분규가 진전된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이제는 이것을 할 때, 정말로 우리가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 예를 들면 고용안정이나 취업알선 그리고 직업훈련

의 인프라에 총력을 경주해서 구축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100% 동감입니다. 그동안 노동부가 노사분규 쪽에 지나치게 많은 정력을 소비해 왔는데 빨리 노사관계는 안정적인 틀로 정착시키고 우리의 노력과 정력을 고용안정사업, 고용 쪽에 이전하자는 얘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부터도 고용안정 쪽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목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수고하셨습니다.

1차로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이나 추가질의하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5분씩 드리니까 계속해서 더 달라고 그래서 아예 10분을 드릴 테니까 10분 다 쓸 생각하지 마시고 가급적 그 안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영주 위원** 10분도 아니고 한 5분 정도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산재기금에 관한 계속 질의입니다.

답변하신 내용도 산재기금이 계속 고갈되는데 미수금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미수금 회수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의견을 내놓고자 합니다.

우선 미수금 회수를 위해서—이 표현이 적당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채권관리팀이라는 전담팀을 만들어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장관님께서 예산 때문에 인원을 늘리는 것이 어렵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노동부장관 김대환** 아닙니다. 이미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채권관리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김영주 위원** 진행을 해도 계속 미회수금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실이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김 위원께서 가진 문제의식과 비슷하게 최근에 미수금 회수에 집중해야 되겠다는 부 내의 판단이 있어서 조치를 취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그것과 같은 일환으로 채권관리팀을 운영하되 불량채권에 대한 외부 위탁 방법도 있겠습니다. 금융기관 같은 경우 외부 위탁기관에다가 불

량채권을 어느 정도 수수료를 주고 의뢰하면 회수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채권추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 인원도 새로 배정해서 가지고 의지를 갖고 미수금을 줄이는 데 노력하신다니 여기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해율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재해율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시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재해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산재기금의 지출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금수지 악화를 막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이 지급보험금을 줄이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재해율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본 위원이 재해율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에서 별도로 거론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해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재해자와 사망자 수가 계속 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는 종류 구분 없이 예방이 중요하겠지만 보험지급과 관련해서도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라 하겠습니다.

최근 빈발하는 화학, 건설, 조선 등 대형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말씀 주신 대로 산재를 줄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노동부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제작년까지 재해율이 감소해 오다가 작년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소한 0.1%포인트 재해율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현재 산업안전 쪽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화학, 건설, 조선업 이쪽에서는 보다 엄격한 안전감독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도·감독 그리고 사고가능성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통해서 이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 재해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고 위험성이 높은 쪽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기금도 중요하지만 일단 사고를 당하면 장애자가 되기 때문에 사전예방과 감독이 필

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동부 2003년도 결산자료 중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동부 2003년에 세입세출 결산개요 12쪽에 의하면 9억 8400만 원을 징수해서 약 3%인 3000만 원밖에 수납을 하지 못했습니다.

장관님께서서는 수납액이 적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이쪽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해서 담당국장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산업안전국장 이채필** 산업안전국장입니다.

에특회계 부분은 85년부터 89년까지 광산업 사업주에게 부과되어 오다가 그 이후에 폐지되었습니다. 지금 징수결정하고 수납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의 대부분은 오래 전에 채권이 생긴 사업사항입니다.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재산조회 결과 완전히 재산이 없다고는 밝히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지고 또 채권회수에서 우선순위가 국세나 지방세가 먼저이다 보니까 경매가 빨리 되면 조금 배당될 수 있는데 경매절차도 늦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제가 조사한 내용도 지금 말씀하신 답변에 더해서 폐광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여러 가지 사업현안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5년 동안 계속된 미수금의 증가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부산업안전국장 이채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정두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언 위원** 제가 오전 질의는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위원들도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충분히 이 사업들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적은 생략하기로 하고, 대략적인 문제점을 다시 한번 큰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실적이 저조한 대표적인 다섯 가지 사업을 말씀드리면, 수강지원금이라든가 유급휴가훈련지원금 같은 경우는 집행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지원대상을 자꾸 확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게 추진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중소기업 근로자나 영세기업 근로자인데 확대하다 보니까 중견기업에 지원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특혜성 지원이 될 가능성도 많아진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게 된 것이지요.

또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신청을 해서 일자리에 들어가고 또 대기인력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또 내년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 지금 대기인력이 그 사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신청자가 들어가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불명확하고 또 지금 지정되어 있는 비영리기관이 그대로 다시 하는 것인지 새로 대체해서 추가로 하는 것인지 이런 모든 문제들이 실제로 실무자들도 확실한 대답을 못할 정도로 사업 자체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고 여러 위원들도 지적했듯이 사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취업지원은 실효성이 있지만 집행이 잘 안 되고 연수지원은 별로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가는데 집행이 좀 쉬우니까 이쪽으로 자꾸 돌리는 경향이 생기고 등등 해서 이 두 가지 사업은 프로그램이 사업으로서 아직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평가가 가능하고, 고용지원금 같은 경우를 보면 집행실적은 높아지는데 그것을 가만히 보면 일종의 착시현상이지요. 그러니까 인원과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집행실적이 높아집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어서 사업을 점점 축소시켜서 결국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역설적인 해석까지 가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과연 계속되어야 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아까 장관님께서도 기본적으로 보완책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용역을 주어서 내년 초에 결과도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당장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만약 내년에 용역결과가 이 사업은 별로 타당성이 없다고 나오면 내년에 책정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제 생각은 용역은 용역대로 추진을 하더라도 내년 예산심의 전에 노동부 자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보완책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장관님께서 여러 차례 선진국에서는 10년 넘게 시행착오를 거쳐서 사업이 정착되었다고 하셨는데 외국의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저한테 자료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일자리가 줄고 실업이 늘고 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현재 기업을 좌악시키는 사회풍토 그리고 반시장적인 정책 때문에 비롯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투자부진을 야기하고 궁극적으로는 고용을 막고 실업을 증가시키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보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방향전환이 없이 노동부가 여러 사업을 뺏길처방 식으로 해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 결산서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심의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보완책이 나와야 되고 노동부 차원을 떠나서 우리 정부 전체 예산정책이라든가 재정정책에서 실업해소와 고용창출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자원을 배분해야 될지 이런 문제는 환경노동위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는 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지적해 주신 고용안정사업이 현재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그 지적을 해 주셔서 안 그래도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도입된 지 얼마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한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제상황이 좋아져야지 실업문제가 숨통이 트이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 경제가 회복이 더딘 것이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기업을 좌악시키는 것과 반시장적인 정책 때문에 그렇다라고 원인을 돌리기에는 너무 과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두언 위원** 장관님 거기에 대해서 저하고 논쟁하자는 것입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논쟁도 필요하면 해야지요.

**○위원장 이경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일단 고용보험기금과 관계해 가지고 오전에 이

것이 운용한 지도 얼마 안 되었고 지금까지 보수적으로 운용해 왔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아까 고용보험기금이 8조 3000억에서 지금 적립된 것이 6조 5000억 정도 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옛날 IMF 때 한참 어려웠을 때 보면 1조 원인가 2조 원 정도 유지하다가 그 이후부터 매년 1조 원씩 증가되어 와서 지금 적립이 많이 된 것인데 그것에 따른 보수적인 운용원칙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 하셨으니까 제가 장관님께서 현재 그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진단을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기금의 과다적립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과다적립 되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좀더 보수적으로 운용하실 계획입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기금의 과다적립은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사업의 부진한 실적하고 맞물려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방면에 아주 전문가가 아니지만 대체로 경제학 전공자로서의 감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면 초기에 대단히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상대적으로 실적이 저조하고 그 결과로 기금이 적립된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는 기금의 규모 문제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의 규모와 내용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중간 점검할 단계에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요율조정 문제도 동시에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조정식 위원** 사업주 쪽에서는 기금도 과다적립 되었는데 고용보험요율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니라 그런 불만스러운 요구들을 많이 하는데……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런 얘기도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오전 질의하다가 채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산재예방시설자금 용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산재와 관련해서 보면 노동부에서 가장 집행률이 높은 것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이고 그것이 50인 미만으로 주로 영세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 위원** 그것은 거의 100% 가까이 집행되고 있지 않나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 위원** 그런데 같은 산재영역에서 보면 산재예방시설자금 용자사업은 2003년 기준으로 봤을 때 50%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각 두 가지 사업의 예산액을 보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365억 원 정도이고 산재예방시설자금 용자는 한 1340억 원, 그 정도로 산재예방시설자금에 대한 용자사업이 액수가 훨씬 큰데 이것은 50%가 안 되고 적은 금액은 거의 100% 다 나가고 그런 부분에서 좀 불균등한 것이 있지 않나 해서 아까 여쭙본 것입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클린사업이 상당히 효과도 있고 수요도 크고 해서 현재 클린사업 쪽 예산은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 500억 원이고 그다음 700억 원 그다음 1000억 원 이렇게 이쪽을 크게 늘리고 또 이 부분은 기획예산처에서도 이 사업의 효과를 인정했기 때문에 적극 지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식 위원**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산업이 고도화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영세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는 중대규모의 사업장에 비해서 자금여건이 특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산재사고가 나면 어찌 보면 더 큰 사업장에 다니는 사람보다 안타깝기도 한데 아무튼 그런 데 대해서 클린사업장 조성사업비용을 연차적으로 늘려간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산재예방시설자금 용자사업이 시중 금리가 요새 굉장히 낮은데 그것 때문에 용자금리가 지금까지 4%였다가 3%로 1% 인하를 했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 타인지 상당히 금리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20% 이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덕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德模 委員**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감사원 감사결과 2개하고 고용안정기금의 수처상의 문제는 따로 정리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德模 委員** 그리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역시 예산을 해 놓고 안 쓰는 문제인데,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된 제도입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얼마 안 되었습니다. 작년 9월부터입니다.

○**李德模 委員** 갑자기 72억 원을 편성해 가지고 실제로는 26억 원을 쓰고 46억 원을 이월했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李德模 委員** 그렇게 급하게 편성해 가지고 많이 이월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작년 9월부터 사업이 시행이 되었는데 당시 여기에 대한 수요는 주로 청년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우선 청년실업률이 대단히 높으니까 이것을 효과적으로 어택(attack)하기 위해서 이쪽에다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다는 것이 작용한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책에 대한 수요가 얼마만큼 될 것인가를 측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일단 요건만 갖추어지면 지원해야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처음에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조금 여유있게 과다 편성한 측면이 있습니다.

○**李德模 委員** 그런데 이것이 과연 추경으로 해야 할 만큼 긴급한 사업입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보기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청년실업률이 작년에 상당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李德模 委員** 사실 그렇게 해 가지고 쓰인 자금을 보면 독거노인이나 노인가정에 가정봉사원 파견, 중풍·치매노인 간병사업인데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에서도 하고 있는 것들이지요?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수요가 예측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충분히 하고 있는데 중복해서 하므로 해서 사실은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예산에 편성시켜서 결국 불용예산만 늘렸다는 판단이 듭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하고는 사업목적과 기능이 구분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주로 사회복지기관 운영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썼고 저희들은 사회복지기관의 사회적 서비스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채용하는 고용 쪽에다 지원했기 때문에 중복된 사업은 아닙니다.

○**李德模 委員** 결국 수혜 받는 기관은 같은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기관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시설이 있고 시설에 대한

복지부의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 일하는 인력은 저희 노동부 지원받아서 일을 하는 이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李德模 委員** 혹시 이것이 연말에 지표상 나타나는 실업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땀질처방 아니었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땀질처방이라고 하면 아마 위원님 질의의 저변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질의이신 것 같은데 저는 그 당시에 정부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할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것이 어떤 의도든간에 청년실업률을 낮추고자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필요했고 현재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李德模 委員** 그다음에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하고 연수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인데 사실은 직장체험 프로그램에 원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적지 않은 218억 원인데 따로 추경을 1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18억 원 중에 46억 원을 못 썼거든요.

왜 갑자기 예산을 100억 원이나 추가로 편성해 가지고 하나도 못 쓰고 다른 데로 전용하게 되었습니까? 2003년도에 보면 취업지원제 본예산이 218억 원입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이 부분은 제가 지난해 사정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고용정책심의관 신영철** 고용정책심의관입니다.

지난해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편성 검토단계인 4월 현재 청년실업률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0.6% 포인트 정도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실업률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청년실업문제에 적극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100억 원을 요구해서 반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李德模 委員** 그런데 실제로는 추가로 받은 100억 원은 물론이고 본예산도 상당부분 못 썼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해도 사용 가능한 예산을 청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노동부고용정책심의관 신영철** 실제 예산을 불용으로 남긴 것은 아니고……

○**李德模 委員** 그러니까 전용한 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청구해 가지고 돈이 나오니까 다른 데로 쓰자 이렇

게 된 것 아닙니까?

○**노동부고용정책심의관 신영철** 취업지원제 예산하고 연수지원제 예산은 같은 항목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李德模 委員** 같은 항목인 것은 아는데 그렇지만 사실은 사업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는 바로 취업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장차 취업을 위한 교육이라는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원래 예산목적하고 전혀 다른 데 써버린 것이 아닙니까?

○**노동부고용정책심의관 신영철** 그 목적은 조금 상이합니다.

○**李德模 委員** 목적도 상이하고 그로 인한 취업 효과도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노동부고용정책심의관 신영철** 그런데 연수지원제도도 청소년의 경력형성이나 진로지도에 도움을 주어서 결과적으로는 취업률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李德模 委員** 그것은 장차의 이야기이고 그때 당시의 예산목적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렇지 않습니다. 연수지원 프로그램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李德模 委員** 그러니까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작년의 경우에 이쪽의 예산이 남으니까 졸업생까지 포함시켜서 연수지원제를 지원했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노동부고용정책심의관 신영철** 지난해는 재학생을 위주로 해서 했고 금년에는 졸업생까지도 포함해서 조금 폭을 넓혀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李德模 委員**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을 청구해 가지고 다른 데로 전용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노동부고용정책심의관 신영철** 전용을 한 것은 아니고 같은 목이기 때문에……

○**李德模 委員** 같은 항 내니까 전용이 가능한데, 항 간 전용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용 아닙니까?

○**노동부고용정책심의관 신영철** 전용은 아니고 내역 변경을 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느 쪽 사업은 예상보다 저조하고 다른 쪽은 예상보다 더 잘 되니까 이것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李德模 委員** 사실 이것을 그동안 시행해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의 진행 방향이나 수요는 대충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그대로 두고 한쪽은 100억을 늘려서 146억을 빼어 가지고 다른 쪽에 준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수요상에 있어서 그런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현실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한 것으로 이해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李德模 委員** 어쨌든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이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심 위원**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서면으로 하기로 하고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것이 불용된 사업에 관련된 것인데 취업훈련지원사업이나 구인업체개척사업, 그다음에 자활취업촉진사업, 직업적응훈련사업이 있는데 직업적응훈련사업은 2003년부터 추진하고 계시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심 위원** 그런데 직업적응훈련사업이 불용이 된 주된 이유가 직업적응훈련을 수료한 경우에 지급되는 자활수당이 소득에 포함되어서 생계급여산정 시 공제되기 때문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장복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불용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따로 방법을 찾으면 불용액이 훨씬 더 줄어들 것 같은데요.

나머지는 제가 서면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하고도 관련이 있어서요.

○**장복심 위원** 예, 같이 연계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재** 장복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종길 위원** 저도 짧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청년실업 대책에 대해 많이 지적하셨는데 저는 사업 단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전 정부 차원에서 각 부처가 대

책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다른 대책보다는 성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집행률이 좀 부진하고 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된 원인은 실업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데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청년실업의 원인은 굉장히 다면적입니다.

최근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청년실업의 원인을 평면적으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상당히 입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청년이라고 하더라도 가구 내에서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적에 타깃그룹별로 정책을 달리해야 되겠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잠정적인 판단이고, 이 연구가 올해 말까지 좀더 심층적으로, 원인 분석이 더욱 더 심층적으로 되면 청년실업 대책을 타깃그룹에 맞게 특성별로 재편하고자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종길 위원** 아까 담당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실업률이 줄지 않고 있고 또 일반 실업률의 2배 이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실업자를 채용할 고용주나 사업장에서는 실제로 해당 실업자가 사업장에 필요한 인력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단기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보면 우리 사회에서 전문대학이나 대학을 졸업한 인력들이 그 인력만큼 사회에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정책을 노동부에 한정하지 말고 교육부 등과 협력해서 필요 없는 과들은 과감히 줄이라고 권고도 하고 또 기술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전문대학이나 대학에도 실제 사회에서 필요한 교육 내용들을 하도록 강하게 권장할 수는 없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지난번 의회에서 의원들께서 입법해 주신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 의해 정부 내에 이것을 다루는 위원회 설치를 지금 현재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말씀하신 부처 간의 문제, 특히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단계, 뿐만 아니라



여러 단계의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년실업해소특별위원회가 가동되게 되면 부처 간에 공동으로 해야 될 사안들이 보다 원활하게 협조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종길 위원** 여차피 정부 차원에서 여러 부처가 협력해서 정부의 실업대책, 노동부 차원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원활한 대책이 세워져서 효과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제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일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일도 위원**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오전에 회의를 진행하는 모두에 존경하는 이목희 위원님이 여러 가지 이유로 노동부 소관 사업장 외의 다른 분들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도 좋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경재 상임위원장은 답변하는 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서의 기관장들께서는 참석하지 않아도 좋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남아 계신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다 가셨습니다.

오늘날의 행정은 정말 적극적인 행정이고 책임행정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 결산위원회가 열리는 것도 단순히 묻고 답변하는 장관과 소관위원회 국회의원 간의 1 대 1 자리가 아니라 저는 봅니다. 이 자리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그것을 해당 소관기관에 반영해서 국민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것, 이것이 결산위원회가 열리는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 나가시고 장관님 혼자서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 나온 관련 분야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장관님께서 어떤 형식으로 해당 소관기관에 전달하실 것입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오늘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을 정리해서 부 내에서도 유별을 하고 산하단체에 관련된 부분은 그쪽에다가 제대로 전달을 해서 위원님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일도 위원** 앞으로도 이런 상임위원회가 계속 열리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저한테 물으시는 말씀이십니까?

○**배일도 위원** 예.

○**노동부장관 김대환** 글썬요……

○**배일도 위원** 하여간에 국가 기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러면 제가 몰매 맞을 테고, 뭐든지 많이 토론하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런 과정에서 국정이 보다 더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지고 또 개선할 수 있는 자극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일도 위원**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앞으로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 모임에 참석하시는 것이 의례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것은 과거의 유산이고요. 오히려 여기에 주무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리고 소관기관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까지 직접 오셔서 하루 정도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들이 오히려 요구되는 시점이 아니냐 싶습니다. 지난날처럼 불러다 놓고 그냥 질의하고 답변 듣고 그런 형식적인 것을 하자는 자리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분위기를 익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숙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일상 업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이 자리에 나와서 직접 위원들과 어떤 정서를 익히는 것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칼자루는 국회의원님들이 쥐고 있으시니까 필요하시는 대로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응하겠습니다.

○**배일도 위원** 아까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는 제출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요.

노동부는 크게 보면, 다 그렇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운영을 하지요? 직원들이 돈 내거나 그래 가지고 어떤 사업을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다 세금입니다. 그 세금을 가지고 크게 보면 하나 일반 예산이 있고 특별한 부분 예산까지를 포함하고 나머지는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기금을 내는 사람도 결국 국민이고 크게 보면 기업과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것을 정해 놓은 것이 헌법상에 몇 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것을 대통령 혼자 못 하니까 정부조직법이라는 것을 정해서 부서를 나누어 놓았습니다. 거기 41조에 보면 노동부에 대해 직무를 무엇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장관님께서 주무장관이시니까 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여기에 적

시되어 있듯이 실업문제, 직업 안정, 그다음 각종 보험과 산재에 관련된 문제, 후생복지, 그다음 근로조건에 대해 기준 설정된 부분에 대한 감독과 그런 부분에 대한 유지 발전을 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해서 무엇 하자는 것이냐?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출된 것을 보면 총체적으로 과연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그와 같은 데 예산을 반영해서 썼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과연 총체적으로 노동부가 운용할 수 있는 기금이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헌법에서 부여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그 방안이 제대로 잡혀져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전체적인 방향은 제대로 잡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신규사업들에 대한 사전적인 경험이나 전문성이 축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사업이 만족스럽게 진행되었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맞게끔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체계적으로 개선안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배 위원께도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일도 위원**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노동조합을 직접 운영하다 왔습니다. 그때 노동부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 운용하는 것을 실제 적용해서 요구했던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막대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 기금이 결과적으로는 운용이 되면, 여유자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으로도 입증은 되었지만, 당사자가 사용을 안 합니다.

실업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자 해서 고용주에게 그 기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면 그 지원을 받아서 실업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이 기업주에게 더 과다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돈을 안 받고 말지 뭐 하러 그 기금을 지원받아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고용주의 입장이나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생색내기용이다, 정부의 체면치레다,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삶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실업문제가 얘기되고 예산문제가 얘기되고 탁아문제가 얘기되고 또 산재문제가 얘기되면 그런 부분을 기금을 가지고, 전체에 100이 필요하다면 한 10 정도 주고 나머지 90은 결국 고용주나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

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이시니까 그 운용 실태도 잘 아실 텐데, 생색내기라고 표현하면 너무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고 보이는데, 결국 제가 의논을 해 보니까 고용안정기금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라고 몇 차례 홍보를 실시해도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까의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거기 가서 받는 시간을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니면 부대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면 이렇기 때문에 정부는 정부대로 기금을 거두어서 돈은 돈대로 다 집행하고 결국은 그 목적도 달성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도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것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 평가한 이후에 정확한 견해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노동행정을 맡으면서 고용안정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이 생색내기라기보다는,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이 기금을 다소 보수적으로 운용 관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고 또 상대적으로 봤을 때 보수적으로 이 기금을 운용하다 보니까 지원금도 실질적으로 아주 인센티브를 느낄 만큼 충분한 금액을 지원하기보다는 그것이 어느 정도 자극적인 그런 촉매적인 역할을 하는 쪽으로 기금을 사용했던 점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인 사업, 개별 사업의 특성 등을 면밀히 분석한 다음에 어떤 부분은 상당히 지원액도 높이고 과감하게 사업을 확대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부분은 다소 조정해야 할 사업 품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고용안정사업을 재검토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배 위원께서 지적하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일도 위원**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전부터 지금까지 지적한 대부분의 문제가 다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본래의 설치 목적에 비해서 액수가 적으니 금액이 적으니…… 이것은 금액을 높이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들이 너무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민 세금의 어떻게 보면 모럴헤저드까지 갈 수 있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서 액수를 증액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정말로 본질적인 기금 설치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오히려 관장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육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각 사업장에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그 사업비에다가 플러스해서 세금을 더 얹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의 방향 설정 자체가 새롭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은 몰라서 묻는데, 진짜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찾아 놓았으면 좋았겠는데, 정부조직법 맨 끝에 보면 전부 한문으로 써 가지고 “……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장리’를 노동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구체적으로……

○배일도 위원 아주 짧으니까 지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41조(노동부) 노동부장관은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기타 노동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각 부처마다 뒤에 “장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장리’라는 뜻을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관장해서 관리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배일도 위원 관장해서 관리한다고 하면 물론 시스템이 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배일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들은 노동부의 인력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부분적으로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고용안정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경험,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고 개선하고 하는 것도 역시 ‘장리’에 속하니까 이런 면에서도 장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일도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이 정부조직법, 정원의 책정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여타 다른 부처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장관께서 의지를 갖는다

고 해서 다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비전 있는 사업들이 실천되기 위해 적절한 인력과 적절한 업무 분장, 또 그것을 총괄해 낼 수 있는 조직적인 시스템이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장관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는 이것이 하나의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이 정말 실현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다른 어떤 사업의 구체적 집행보다 우선해서 검토돼야 될 내용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 질의 겸 제안으로 드렸습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전적으로 취지에 동감합니다.

○배일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배일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법 조항에 “장리한다” 하는 것을 쉬운 우리말로, 그뿐만 아니라 다른 법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글세대가 나옵니다. 배일도 위원님이 전혀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대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감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한글세대를 생각해서 앞으로는 법률용어를 쉽게 고칠 수 있으면 고쳤으면 합니다.

이목희 위원님.

○이목희 위원 짧게 해 보겠습니다.

사실 어제는 환경부를 하고 오늘은 노동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결산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월액도 있고 불용액도 있고 항목 내역 변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것도 그냥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창조적 사업, 사업을 좀 창조적으로 잘하고 잘 밀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단, 불용액이 어떻고 그런 것은 작은 것이고 이런 것은 매우 큰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안정센터가 IMF 때 만들어졌습니다. IMF의 그 이수라장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을 근원적으로 혁신해야 될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람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그분들의 신분이나 처우도 그렇고 해서 하여튼 총체적으로 고용 안정, 취업 알선, 직업 훈련 이런 것과 관련된 인프라를 이제 제대로 혁신하고 구축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이것에 대한 장관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러한 시점에 왔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무회의 때 이러한 문제를 논의했고 대통령께서도 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다른 부처와 적극 협력해서 이것을 혁신할 수 있는 기획단을 구성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지금 현재 그렇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목희 위원 그것은 좋은 일 같고요.

참 힘든데 또 요청을 드려서 그렇기도 합니다. 사실 그동안 노동부는 노사관계를 위해 열심히 하다가 이제는 고용·실업을 좀 했는데 사실 노동부가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인적자원 개발입니다. 지금 노동부에서 인적자원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인가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인적자원개발과가 있고 능력개발심의관이 있습니다.

○이목희 위원 이것은 노동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교육부와 연계되어 있기도 한데 사실은 그동안 노사관계나 실업 문제에 대응하느라고 잘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중장기적으로 인적자원 개발의 기초는 구축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형편에서는 노동자의 손끝에서 나오는 기술이 국가 경쟁력 강화의 요체이며 실제적인 경제발전의 토대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힘이 좀 드시지만 인적자원 개발을 향한 노력들을 조금씩 본격화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 노동부로서는 인적자원 개발과 직업훈련 쪽으로 역량을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목희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짚막하게 홍보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40시간제, 공무원 노조, 퇴직연금, 비정규직 법안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제 관점으로 보면 원칙에 어긋나는 법안이—물론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마는—아닌데 노사 일각의 목소리 높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일각에서 보면 정부가 꼭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것처럼, 때로는 잘못된 것처럼 인식을 하는 일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노사 일방에 손해가 안 되면서 타방에 이익이 되거나 타방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뭐래도 한다,

예를 들어서 퇴직연금 같은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노동계 일각에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사용자들도…… 공식석상이니까 말을 가려서 하겠습니까마는, 저는 어제 약간 경악스러웠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재계 일부의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너무 나간단,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 일부가 반대해도 국민 다수가 지지하면 한다, 이것이 분명한 원칙으로 자리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공무원 노조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사 일부가 반대해도 국민 다수가 지지하면 한다, 그래야 되고요.

○노동부장관 김대환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목희 위원 노사 일부를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체 대중을 상대로 간다, 예컨대 비정규직이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일각에서 주장하는 비정규직은 특정 비정규직을 옹호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세부적인 부족함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노동부가 만들고 있는 법안이 전체 비정규직을 위해 조금이라도 무엇을 해 보려는 노력 아납니까?

마지막으로 주40시간제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휴가가 좀 깎이니 뭐니 해도, 당장은 좀 손해가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면 한다, 이것이 주40시간제입니다.

저는 이런 원칙을 분명히 하고, 물론 언론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언론 환경이 안 좋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당당하고도 폭넓게 홍보 노력을 강화하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홍보도 중요하다는마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방금 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원칙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는 것이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필요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도 또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목희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보기에 지금 현안을 둘러싼 노사 일각의, 노사 전체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사 일각의 반발이라든지 발언은 제가 보기에 한쪽으로는 좀 기만적인 얘기가 있고 한쪽으로는 도를 지나쳤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저도 정치인으로서 하겠습니까마는 노동부에서도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적절하

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연금으로 인해 기업에 이중 부담이 되고 엄청나게 가중되니까 자기 이름을 내지도 않고 경영계의 고위 관계자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퇴직연금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퇴직금 적립할 것을 안 하고 갖고 있다가 그것을 적립해야 되니까 불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좀 정확하게 지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노동부장관 김대환** 예,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저희 노동부가 그런 면에서 확실히 중심을 잡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원식 위원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과 관련해서 숫자상의 차이가 있는데 잘못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위원장이 확인해 본 결과 분류상의 문제로 차이가 생긴 것이지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배일도 위원님께서 약간 문제를 제기하셨고 또 요즘 언론에서 위원회가 열릴 때 복도까지 공무원들이 꽂 차서 앉아 있는데 공무원들의 인력을 지나치게 낭비하는 것 아니냐, 답변하는 국무위원이 업무파악을 잘못하고 자신이 없어서 죽 나열시켜서 앉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어제 TV에서 본 적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간이 아까우니까 가능하면 많은 공무원들이 자기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는 것이 국민에게 더 봉사를 하는 것이다……

국회에 오랫동안 나와 본 사람으로서 국회는 모처럼 열리지만 시간 낭비라기보다는 생생한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감은 좀 가져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듣는 것도 국회의 큰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록 이 자리에 안 왔지만 국회의 목소리가 바로, 국정감사할 때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필요한 인원에게만 주고받지만 각 사무실에서 그것을 다 청취함으로써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듯이 이런 것이 일반 공무원이나 공직자들에게 다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사실은 제가 모두에 이 발언을 하려고 했습니다. 결산 내용에 대한 것보다는 결산을 심의하는

절차 문제에 있어서 아까 배일도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16대 국회의 정치개혁특위에서 제가 국회법 소위원장을 맡아서 국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바로 예산 결산을 다루는 것의 절차가 좀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특히 결산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산안의 제출을 5월 말에 하고 그 이후 6월에 임시국회를 열든가 해서 정기국회 전까지는 결산을 다룰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개원 국회 때 여야 간에 예산 결산을 상설화하는 내용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정신으로 결산안을 5월 말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회계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되어서 아마 종전대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법적·제도적으로 국회에서 마무리지어야 할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가령 재경부에 안을 내고 재경부에서 모아 가지고 늦게 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일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별도로 각 부서는 부서대로 상임위원회에 비공식적으로라도 그것을 제출해서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산이 의결되건 승인되건 안 되건 법적으로 제재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아무런 책임이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그러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중대한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는 위원회 차원에서 또는 본회의 차원에서 승인 안 해 줄 것은 안 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작년에 KBS의 결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 직접 문제를 제기해서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법적인 어떤 제재는 없지만 정치적 파장은 상당히 큰 것입니다. 일종의 하나의 불신임과 같은 효과가 발생되고 이것이 예결위에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국회법상 감사청구제도가 신설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큰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감사청구를 하는 바람에 다시 거기에서 감사를 해서 내용이 발표되어 가지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KBS가 내부적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KBS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

어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현재까지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그쳤지만 앞으로 이런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언제든지 상임위 또는 본회의에서 그것을 부결시키고 또 감사청구를 해서 상당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감사를 철저히 하자는 뜻에서 오늘 배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는 것을 잘 인식하시고 앞으로 내년도에 결산안을 제출하실 때는 만일 재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늦어지더라도 미리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된 것은 시간이 짧았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1항~제3항 2003 회계연도 노동부 소관의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여유 있으니까 소위원회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더 하시고 또 관계자를 불러서 청취할 것은 더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 중에서 배일도 위원, 이덕모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9월 3일까지 노동부의 답변서를 요구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해서 9월 3일까지 모든 위원님들과 위원회 행정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병호 위원님께서 오늘 출석을 안 하셨지만 어제 노동부에 대해 서면질의서를 내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에 대한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노동부 소관 결산 심사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흔히 오후 마지막쯤 되면 위원님들이 거의 이석을 하시는데 오늘 끝까지 자리를 해 주신 이목희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장복심 위원님, 제종길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그리고 배일도 위원님, 이덕모 위원님, 정두언 위원님은 속기록에 분명히 기록하셔서 훌륭한 의정활동을 하셨다는 기록을 후세에 남겨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배일도 위원 저는 몇 번 나갔다 왔어요.

○위원장 이경재 마지막에 앉아 있는 분이 끝까지 잘하신 분입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장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出席委員(12人)

김 영 주	김 형 주	박 희 태	배 일 도
우 원 식	이 경 재	李 德 模	이 목 희
장 복 심	정 두 언	제 종 길	조 정 식

○請暇委員(1人)

孔 星 鎭

○出席專門委員

수 석 전 문 위 원	하	중	범
전 문 위 원	박	용	관

○政府側參席者

노 동 부				
장 차	관 관	김 박	대 길	환 상
기 획 관 리 실 장		정 병	병 석	훈
고 용 정 책 국 장		최 최	민 기	택
노 사 정 책 국 장		노 노	현 현	필
근 로 기 준 국 장		엄 이	채 승	주
산 업 안 전 국 장		양 신	영 상	철 석
고 용 평 등 국 장		이 백	중 철	면 균
고 용 정 책 심 의 관		정 백	인 천	
노 동 보 험 심 의 관		김 김	원 배	
능 령 개 발 심 의 관				
국 제 협 력 관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상 임 위 원				
노 사 정 위 원 회				
상 임 위 원				

○其他參席者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	용	석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동	훈
이 사 장			
한국산업안전공단	김	용	달
이 사 장			
한국장애인고용촉진	박	은	수
공 단 이 사 장			
한국노동교육원장	안	중	근

【報告事項】

○議案回附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8월23일 정병국·염동연·박세환·권영길·

유승민 · 정종복 · 이재오 · 이기우 · 조승수 ·  
김성곤 ·곽성문 · 조성래 · 배일도 · 최인기 ·  
노현송 · 유정복 · 이인기 · 주호영 · 이해봉 ·  
김재원 · 이근식 의원 발의)

8월24일 회부됨

**악취방지법중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

(8월23일 박순자 · 강성중 · 김문수 · 김성곤 ·  
김영숙 · 김영춘 · 김재원 · 김태년 · 노웅래 ·  
류근찬 · 박기춘 · 서병수 · 심재덕 · 심재철 ·  
안상수 · 안택수 · 오제세 · 유승민 · 유정복 ·  
윤건영 · 이군현 · 이근식 · 이기우 · 이낙연 ·  
이상득 · 이상락 · 이인기 · 이재오 · 이해봉 ·  
조승수 · 진수희 · 한병도 · 허천 의원 발의)

8월24일 회부됨